

#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

## - 부가가치세

호주 편

최정희

2019. 12

#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

## - 부가가치세

호주 편

최정희

2019. 12

〈주요국의 소비세제도〉는 〈주요국의 소득세제도〉에 못지않게 연구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이다. 특히 최근 주요국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소비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주요국의 소비세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책입안자와 연구자에게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의 소비세제도』의 전체 구성은 제1권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도, 제2권 주요국의 개별소비세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제1권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우선 발간하고,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개별소비세제도는 추후에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도는 분량이 방대하여 국가별로 분권하되 전 6권 세트 형태로 출판한다.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정책입안자 및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및 유럽연합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유럽형 부가가치세와 다른 형태의 판매세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대신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되는 유럽연합을 추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주요국의 조세제도』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별 부가가치세제도를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및 통계자료도 제시하였다. 또한, 부록에 개별 국가의 부가가치세법 조문 목차를 수록하여 연구자들에게 해당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도 높였다. 다만, 조세제도 자체가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주요국의 소비세제도는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별 국가의 최신 내용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OECD 홈페이지, 각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요 출판물 및 관련 법령정보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무열 초빙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영국 편은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일본 편은 요코하마시립대 국중호 교수, 호주 편은 건양대 최정희 교수, 프랑스 편은 강남대 안창남 교수와 손승연 프랑스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고, 유럽연합 편은 강남대 안창남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독일 편은 본인과 독일 세법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대자동차 유럽본부 이유향 세무팀장이 공동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보고서 작성과정 중에 있었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에서 감수 및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교정과 편집을 도맡아주고 회의를 준비해준 권선정 선임연구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 목 차

<b>I. 부가가치세 개관</b> .....	1
1.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제도의 역사적 배경.....	3
2.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과세체계.....	7
<b>II. 납세의무자</b> .....	15
1. 사업자의 개념.....	17
2.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체(Entity)의 범위.....	18
3. 사업 수행(Carrying on an enterprise) 요건.....	20
<b>III. 과세거래</b> .....	27
1.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	29
2. '재화'의 공급.....	34
3. '용역'의 공급.....	36
4. '부동산(Real property)'의 공급.....	37
5. 기타.....	37
<b>IV. 과세표준</b> .....	53
1.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	55
2.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58
3. 기타.....	59
<b>V. 세율과 세액의 계산</b> .....	63
1. 기본세율구조(일반세율/감면세율).....	65
2. 매입세액 공제.....	68
3. 특정 식품소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계산제도.....	76
4.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83

<b>VI. 영세율과 면세제도</b> .....	87
1. 과세 제외 공급(Non-taxable supplies).....	89
2. 영세율(GST-free supplies).....	89
3. 면세(Input taxed supplies).....	91
<b>VII. 공급장소와 공급시기</b> .....	93
1. 공급장소.....	95
2. 공급시기.....	96
<b>VIII. 부가가치세 행정</b> .....	101
1. 과세기간·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지.....	103
2. 세금계산서.....	108
3. 신고와 납부.....	115
4.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119
5. 사업자등록.....	119
6. 확인조사.....	120
7. 행정상 제재(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등).....	122
8. 행정형벌(벌금, 징역).....	126
<b>IX.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b> .....	129
1.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 기본구조.....	131
2. 소규모 사업자 요건.....	132
3. 총매출액(Aggregated turnover) 계산.....	135

# 목 차

<b>X. 기타 - 호주 소비세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b> .....	137
1. 외화환산.....	139
2. 수입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별규정.....	140
3. 여행 및 여행주선에 대한 과세.....	142
4. 투자용 금 판매에 관한 과세.....	145
5. 중고품 거래 과세.....	145
6. 제1차 생산자(Primary producers) - 농업·임업사업자의 경우.....	147
<b>참고문헌</b> .....	149
<b>〈부록〉 호주 부가가치세법(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목차</b> .....	151

〈표 I-1〉 호주 연방정부 세수 구조.....	5
〈표 I-2〉 호주 부가가치세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의 장(Chapter)과 편(Part)의 구성.....	7
〈표 I-3〉 호주 국세청 행정규칙 개요.....	11
〈표 III-1〉 수입 과세가격(Value of the Taxable Importation: VOTI)의 계산.....	50
〈표 IV-1〉 혼합공급(Mixed supplies)과 합성공급(composite supplies) 예시.....	57
〈표 V-1〉 국세청이 정한 사업표준.....	80
〈표 VI-1〉 영세율 적용 공급.....	90
〈표 VI-2〉 면세 적용 공급.....	92
〈표 VIII-1〉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04
〈표 VIII-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16
〈표 VIII-3〉 호주의 「조세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3
〈표 VIII-4〉 일반가산금 요율(General interest charge: GIC).....	125

# 그림 목차

[그림 I -1] 호주의 간접세의 진화과정..... 4

## I. 부가가치세 개관

1.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제도의 역사적 배경
2.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과세체계





# I. 부가가치세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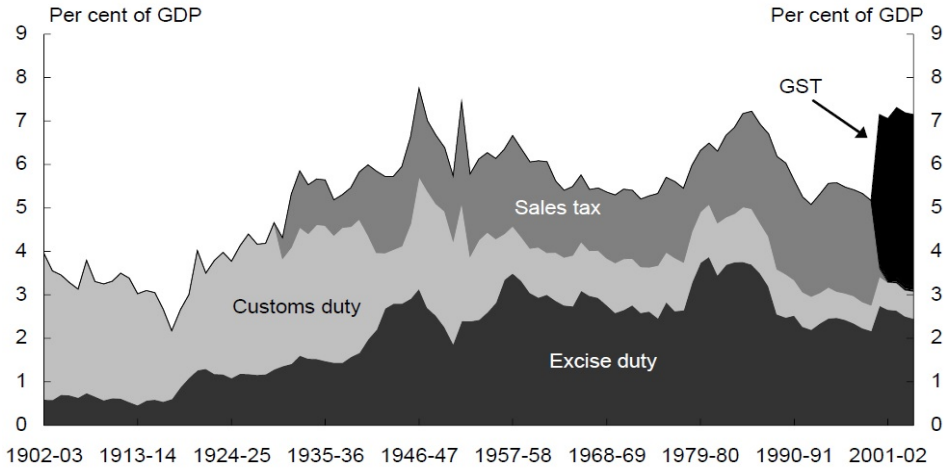
## 1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제도의 역사적 배경

### 가.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도입 배경

호주의 Howard 정부는 유럽형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모델을 따른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이하 호주 부가가치세(GST)라 칭함)를 2000년 7월에 도입하였다. 호주 부가가치세 이전에는 「도매판매세(wholesale sales tax: WST)」가 운용되었는데, 호주 부가가치세는 이런 도매판매세뿐만 아니라 여러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세금 및 은행세(banking taxes)와 인지세(stamp duty) 같은 세금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호주의 간접세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시대적 사건에 의해 야기된 급증된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성장을 해왔다. 1930년 대공황의 시작과 1920년대 말 정부의 채무상환비용으로 인하여 호주정부는 대규모 재정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1930년 「도매판매세(WST)」를 도입하였다. 도매판매세는 과세대상 계층(taxing points)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매 단계에 부과되었다.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세율이 2.5%였으나 1년 안에 6%로 인상되었으며 1999년에 세율은 최저 12%에서 최고 45%까지 6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졌다.

그림 I-1 호주의 간접세의 진화과정



출처: Sam Reinhardt & Lee Steel,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2006, p.19.  
[https://www.taxsuperandyou.gov.au/sites/default/files/01\\_Brief\\_History.pdf](https://www.taxsuperandyou.gov.au/sites/default/files/01_Brief_History.pdf)에서 이용 가능.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매판매세(WST) 과세표준은 소비 비율 하락에 따라 감소하였고, 용역에 대한 소비지출부분이 더 많아졌다. 1955년 도매판매세(WST)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적 소비 부분은 22%로 떨어지고, 이전에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던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와의 구분도 불분명해졌다. 재화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서 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될 경우 명목적 도매판매세의 가치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복잡성, 불확실성 및 납세자와의 분쟁을 야기했다. 또한 다단계의 세율구조도 납세순응비용 및 행정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의 유인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좁은 과세기반과 차등적 세율구조는 낮은 세율 또는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선호하도록 하여 생산과 소비 결정의 왜곡을 가져왔다. 생산 체인을 통한 도매판매세의 누적효과는 생산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수출경쟁력을 감소시켰다.<sup>1)</sup>

1) Sam Reinhardt & Lee Steel,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2006, p.19.  
[https://www.taxsuperandyou.gov.au/sites/default/files/01\\_Brief\\_History.pdf](https://www.taxsuperandyou.gov.au/sites/default/files/01_Brief_History.pdf)에서 이용 가능.

1985년과 1993년 광범위한 과세기반을 가지는 소비세 도입이 주장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2000년 연방정부는 대규모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모델을 기반으로 한 「재화와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GST)」로 칭함)를 도입하였다. 호주 부가가치세(GST)는 연방 재정과 관련한 개혁과 더불어 도매판매세(WST)와 여러 비효율적인 주세(state taxes)를 대체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주와 지방정부로 배분되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였고,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 줄이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하여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급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개인소득세가 감소되었고 가족, 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되었다. 또한 도매판매세(WST)의 폐지와 부가가치세(GST)의 도입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세(excise tax)와 몇몇 특별간접세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부가가치세(GST)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GST) 과세기반에 대하여 몇몇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기초 식료품과 개인 용품을 과세기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세(GST) 도입에 따른 교육 및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호주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표 I-1 호주 연방정부 세수 구조

(단위: 백만호주달러)

세목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소득세 등 이익세	241 797	248 435	258 610	265 116	281 157	312 474
근로세	646	844	735	670	605	1 107
재산세	-	-	-	-	-	-
부가가치세	84 725	90 377	92 225	97 181	99 913	106 492
사용세와 활동세	10 170	10 574	3 661	6 289	6 900	7 163
총세수	337 338	350 230	355 232	369 257	388 576	427 237

출처: 호주의 2017~2018 세수 분석(Taxation Revenue, Australia, 2017-18), 호주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mf/5506.0>에서 이용 가능.

## 나. 주요 연혁 및 변천 과정

호주 「헌법」 제96조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sup> 이 규정에 근거하여 호주 부가가치세(GST)는 주정부(States)와 지방정부(Territories)를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부과하며, 모든 부가가치세 세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배분이 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호주 국세청에 행정비용을 지불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부 간 합의(Intergovernmental Agreement)는 호주 부가가치세법(GST)의 제정과 더불어 제정된 「연방정부와 주(州)간 재정협약(A New Tax System(Commonwealth-State Financial Arrangements) Act 1999)」의 별표(Schedule)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협약에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주(州) 간 배분과 「부가가치세법」의 중요한 개정(예를 들면, 세율)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0조는 협약을 따르고 시행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목적이 라고 하고, 제11조는 부가가치 세율에 대한 변경은 모든 주(州)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기반(base)에 대한 변경은 ① 부가가치세 과세기반(base)의 온전함(integrity) 유지, ② 행정의 단순성, ③ 납세자 순응비용 최소화라는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간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1999년 합의는 현재까지 19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몇몇 법령 수정을 제외하고 세율의 변화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

2)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The Constitution) §96(Financial assistance to States) During a period of ten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wealth and thereafter until the Parliament otherwise provides, the Parliament may grant financial assistance to any State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Parliament thinks fit.(호주 「헌법」 제96조: 연방정부 수립 후 10년간 그리고 그 후 연방의회가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의회는 의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주(州)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부가가치세법」상 몇몇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2015년에는 디지털생산품의 판매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위 넷플릭스세(Netflix Tax)가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해외 공급자로부터의 디지털콘텐츠의 구입한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 2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GST) 과세체계

### 가.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 법령 체계

#### 1) 법령

호주 부가가치세 법령의 가장 주된 법은 「1999년 부가가치세법」이며, 원어 표기는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이다.<sup>3)</sup> 호주 부가가치세법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다.<sup>4)</sup>

표 I-2 호주 부가가치세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의 장(Chapter)과 편(Part)의 구성

장(Chapter)		부(Part)	
번호	내용	번호	내용
1	개관 (Introduction)	1-1	서언(Preliminary)
		1-2	이 법의 사용(Using this Act)

3) 호주의 부가가치세법인 “Goods and Services Tax Act”는 문구 그대로 “재화와 용역세”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 부가가치세(GST)의 본질은 유럽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의 그것과 거의 같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기존 용어의 사용례가 부가가치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앞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또는 부가가치세(GST)법이라고 지칭한다.

4) 호주의 부가가치세법의 구조는 “장(Chapter)-편(Part)-부(Division)-과(Subdivision)-조(Section)”로 이루어져 있다.

〈표 1-2〉의 계속

장(Chapter)		부(Part)	
번호	내용	번호	내용
2	기본 규칙 (Basic Rules)	2-1	중심 규정(Central provisions)
		2-2	공급과 취득(Supplies and acquisitions)
		2-3	수입
		2-4	세액 계산 및 조정(Net amounts and adjustments)
		2-5	사업자 등록
		2-6	과세기간
		2-7	신고, 납부 및 환급
		2-8	특별규칙 체크리스트(checklist)
3	면세(Exemptions)	3-1	과세대상 공급이 아닌 공급
		3-2	비과세 수입(Non-taxable importations)
4	특별 규칙 (Special Rules)	4-1	사업체(Entities)의 특정 조직방식에 대한 특별규칙
		4-2	공급(Supplies)과 취득(Acquisitions)에 대한 특별규칙
		4-3	수입에 대한 특별규칙
		4-4	세액 계산 및 조정에 대한 특별규칙
		4-5	사업자 등록에 대한 특별규칙
		4-6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규칙
		4-7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특별규칙
5	잡칙 (Miscellaneous)	5-1	잡칙(Miscellaneous)
6	이 법의 해석 (Interpreting this Act)	6-1	이 법의 해석 규칙
		6-2	일부 중요한 개념의 의미
		6-3	사전(Dictionary)

출처: 호주 부가가치세법(GST)의 법조문 목차를 참고하여 정리함

호주 부가가치세(GST)법의 여러 조항은 국세청 또는 장관에게 이 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up>5)</sup> 호주 부가가치세(GST)법

5)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서는 '법규명령'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제66조~제70조는 국세청이 특정한 부가가치세(GST) 규칙이 중고용품에 적용되는지 여부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부가가치세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sup>6)</sup> 이러한 법규명령은 일정한 제목을 가지지는 않고 각 법규명령마다 제목과 번호를 부여받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70조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의 제목은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Rules for Applying Subdivision 66-B Determination(No 31)2015 [SHG 2015/31:acquisition of second-hand goods]”이다. 이러한 법규명령(legislative determinations)은 국세청이 공적 통칙 시스템(public rulings system, GSTD 시리즈)하에서 발행되는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결정과는 구별된다.<sup>7)</sup>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연방정부와 주(州) 간 재정협약」, A New Tax System (Commonwealth-State Financial Arrangements) Act 1999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간의 합의 사항 및 주(州)정부로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와인과 고급자동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와인균등세법」(A New Tax System(Wine Equalisation Tax) Act 1999)과 「고급자동차세법」(A New Tax System(Luxury Car Tax) Act 1999)에서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와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에 대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와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는 원래 규정되어 있던 그에 대한 판매세(sales tax)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호주 부가가치세(GST)법과 「와인균등세법」, 「고급자동차세법」 외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된 세법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관세」(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Imposition - Customs) Act 1999), 「부가가치세 부과-소비세」(the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Imposition - Excise) Act 1999), 「부가가치세 부과-일반」(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6) Wolters Kluwer, *Australian GST Legislation with Overview 2019*, 22nd Edition, Wolters Kluwer, 2019, p.31.

7) *Id.*

Tax Imposition - General) Act 1999)이 있다.<sup>8)</sup>

부가가치세 과세 행정에 관한 일반적 절차규정은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법」(A New Tax System(Australian Business Number) Act 1999)에는 부가가치세(GST) 등록번호인 호주의 사업자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ABN))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999년 부가가치세 규칙」(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Regulations 1999)에도 세금계산서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면세상품의 정의와 같은 중요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 2) 국세청 행정규칙

호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지침, 해석, 안내 등을 위한 여러 행정 규칙을 발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국세청 통칙(rulings)으로 이는 다시 공적 통칙(public rulings), 사적 통칙(private binding rulings: PBRs), 지침 가이드라인(Law Companion Guidelines), 실무 지침 안내서(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s: PCGs)로 나뉘지며 구두로 발행되는 통칙은 없다. 또한 공격적 조세 전략(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처하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안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납세자 경보(Taxpayer Alerts: TAs)와 국세청의 법해석에 대한 해석 결정(Interpretative Decisions: IDs)을 발행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을 구속하지만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8) 경과규정에 대한 범으로는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Transition) Act 1999* 가 있으며, 이전에 이루어진 장기간의 계약에 따른 일정한 과도기의 공급(transitional supplies)의 수령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는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Imposition(Recipients) - Customs) Act 2005*,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Imposition(Recipients) - Excise) Act 2005*, *A New Tax System(Goods and Services Tax Imposition(Recipients) - General) Act 2005*에 규정되어 있다.

표 I-3 호주 국세청 행정규칙 개요

유형		주요 내용
통칙 (Rulings)	공적 통칙(Public Rulings)	세법의 특정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공식적 견해를 나타냄
	사적 통칙(Private Binding Rulings: PBRs)	공적 통칙과 유사하나, 사적 통칙은 신청인에 한해 유리한 방향으로 구속적 효력 가짐
	지침적 통칙(Law Companion Rulings: LCRs)	최근 개정된 법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제공
	실무 지침 안내서(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s: PCGs)	세법이 불확실하거나 행정적 순응부담이 생길 경우 국세청의 순응 조치를 설명
납세자 경보(Taxpayer Alerts: TAs)		최근에 발생하는 중요한 공격적 조세전략이 가지는 조세부담의 위험성에 대하여 조기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
해석 결정(Interpretative Decisions: IDs)		특정한 사안(issues)에 대한 국세청 결정의 요약, 비구속적 지침이나 통칙은 아님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8-030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하였음

통칙(Rulings)은 세법의 특정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 세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알리기 위하여 국세청이 발하고 있으며 모든 통칙은 국세청을 구속한다. 단 사적 통칙은 통칙의 발행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청이 사적 통칙을 발행할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사적 통칙을 발행한 후에 법이 그 통칙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바뀐 경우 납세자는 법이 개정되는 날까지 그 통칙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행할 수 있다. 지침적 통칙(Law Companion Rulings: LCRs)은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 통칙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sup>9)</sup> 실무 지침 안내서(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s: PCGs)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공적 통칙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지침서에 대하여 변화

9) 이전에는 지침 가이드라인(Law Companion Guidelines)이라고 알려진 것임.

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지침을 신뢰하고 있던 납세자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0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통칙(GST rulings)은 과세통칙의 일반적 체계(general system of taxation rulings)로 통합되었다.<sup>10)</sup>

국세청 해석 결정(Interpretative Decisions: IDs)은 특정한 이슈가 국세청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guidance)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가 합법적으로 해석 결정을 신뢰한다면, 그 해석 결정이 나중에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벌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가산금은 부과될 수 있다.<sup>11)</sup>

## 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 1)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의 유형(소비형 부가가치세)

호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유형(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 국민순생산형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중에서 소비형(consumption) 부가가치세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인 개인적 소비지출(final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무형자산 포함),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급자에 대한 공급 가격에 대하여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수령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의하여 보완된다.<sup>12)</sup>

10)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Div 357 to 359.

11)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8-030.

12) McCarthy, *Australia's GST design, digitisation and disruption*, "20th Anniversary of the GST in Australia: Where policy meets reality" conference 발표자료, UNSW Business School, p. 16, 2019, [https://www.business.unsw.edu.au/News-Events-Site/Events-Site/Documents/Denis-McCarthy\\_%20GST-design-digitisation-and-disruption\\_paper.pdf](https://www.business.unsw.edu.au/News-Events-Site/Events-Site/Documents/Denis-McCarthy_%20GST-design-digitisation-and-disruption_paper.pdf)에서 이용 가능.

## 2)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 Tax)의 과세방법 - 간접법(전단계 세액공제법)

호주의 부가가치세는 간접법인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계산규정을 살펴보면 납세자는 한 과세기간 동안 생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동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납부해야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 3)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채택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재화의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원산지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는 방법인데, 수출품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수입품에는 과세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호주의 부가가치세법은 세액공제체계를 가진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sup>13)</sup>

13) McCarthy, *Australia's GST design, digitisation and disruption*, "20th Anniversary of the GST in Australia: Where policy meets reality" conference 발표자료, UNSW Business School, 2009, p. 4.



## II. 납세의무자

1. 사업자의 개념
2.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체(Entity)의 범위
3. 사업 수행(Carrying on an enterprise) 요건





## II. 납세의무자

### 1 | 사업자의 개념

호주 부가가치세(GST)법에서 사업자등록(registration)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사업자등록(registration)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수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사업자(entity)의 판매나 공급에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둘째,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input tax credits)가 허용되며,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주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자, ② 법적으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③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자, 이 세 가지 유형을 상정해볼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거나, 특정일부터 사업을 수행할 의도가 없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sup>14)</sup> 즉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특정일부터 사업을 수행하기로 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거주자 및 비거주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매출액(GST turnover)이 7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sup>15)</sup> 비영리단체의 경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150,000달러이다.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벌칙

1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3-10.

1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3-5; \$75,000은 '사업자등록 매출액 기준'(registration turnover threshold)이라고 한다(§23-15).

및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4년의 기간이 넘어가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업체(entity)에 해당하는 납세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업체(entity)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자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자등록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신청도 포함된다. 사업자등록번호(ABN)는 모든 사업자들이 반드시 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할 사업자 고유의 번호이며, 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각종 공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 2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업체(Entity)의 범위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entity)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업체는 아래의 8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개인(individual) 또는 자연인이다.

두 번째는, 법인체(body corporate)인데, 여기에는 회사,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 신용조합(credit union), 노동조합(trade union), 법정 단체(statutory body), 시의회(municipal council), 사단법인(incorporated association) 그리고 다양한 종교단체에 의해 지배되는 일정한 단체를 포함한다.<sup>16)</sup>

세 번째는, 단독법인(corporation sole)으로 어떤 1인과 그 자의 그 특정한 직을 승계받는 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sup>17)</sup>

네 번째는, 정치적 단체(body politic)로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각 기관은 기술적으로는 사업체(entity)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이란 파트너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의

16) Miscellaneous Taxation Ruling MT 2006/1.

17) 주교직(bishopric)이 그 예이다.

연합(association)이기도 하며<sup>18)</sup>, 공동으로 소득을 수령만 하는 자들의 연합이기도 한데,<sup>19)</sup> 모두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체(entity)이다. 국세청은 파트너들이 모이고 수입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수행할 때 세법상의 파트너십이 시작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수입이 공동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0)</sup> 세법상의 파트너십에서의 어떤 변화는 그 파트너십을 종료시킨다.<sup>21)</sup> 그러나 부가가치세 목적상 일반법상의 파트너십에서 단순한 회원의 교체는 파트너십 사업에서 연속성 조항(continuity clause)이 있고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이전의 파트너십이 종료되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창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22)</sup>

파트너십이나 별도의 사업체 창설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그 자체가 사업체는 아니고, 비사업체 합작투자가 된다.

여섯 번째는, 위에서 언급된 사단법인 외의 사단법인 또는 단체이다. 예를 들어 자선단체, 클럽, 일정한 연합체이다.

일곱 번째는, 신탁(trust) 또는 특정 시기의 신탁의 신탁관리인(trustee)인데, 이들 둘 다 사업체(entity)로 취급된다.<sup>23)</sup> 신탁은 권리 측면에서는 법인(legal person)이 아니고 법적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신탁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업체는 신탁이고, 법인(legal person)이 요구될 때<sup>24)</sup> 신탁 관리자가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sup>25)</sup>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신탁관리자(trustee)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 번째는, 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 또는 특정 시기의 기금의 관리인이다.

18) 일반법상의 파트너십이다.

19) 세법상의 파트너십이다.

20) GST Ruling GSTR 2004/6.

21) GST Ruling GSTR 2004/6; see also Russell v FC of T 2009 ATC ¶20-143.

22) GST Ruling GSTR 2003/13.

2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84-1(1),(2).

24) 예를 들어 재산을 양도할 때나 서류에 서명을 할 경우.

25) GST Ruling GSTR 2006/1.

### 3 | 사업 수행(Carrying on an enterprise) 요건

#### 가. 사업(Enterprise)의 의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사업체(entity)의 범위 안에 속하는 사업자가 ‘사업(enterprise)’을 수행하여야 한다.<sup>26)</sup> 사업(enterprise)이란 매우 폭넓게 정의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상업(business)이다. 사업의 의미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상업(business), 상업거래(trade), 전문직(profession), 직업(vocation, calling)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일 활동이나 일련의 활동.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사단법인(bodies corporate of apartment blocks)<sup>27)</sup>, 비영리 클럽이나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업 유사활동 포함.
- ② 상업거래(trade) 성격의 일회성 벤처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일 활동이나 일련의 활동. 여기서 이윤이 창출된다는 것이 반드시 그 활동이 상업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거주주택, 자동차, 다른 사적 자산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일반 대중들에게 차량공유서비스(ride-sourcing services)를 상업거래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sup>28)</sup>

#### 예시

납세자의 사업은 교외에 위치한 상점을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개조하여, 재매매를 하는 것이다. 취득·개조·재매매라는 각 활동은 비록 개별로 분리되지만 사업

2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3-5, 23-10.

27) Body Corporate, Villa Edgewater Courts 23092 v FC of T 2004 ATC 2056.

28)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3-020.

(enterprise)으로 취급된다. 또 그 상점을 처분할 경우 고정자산(capital asset) 처분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이익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상 총매출에 제외되지 않는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3-020.

- ③ 부동산 리스(leasing), 라이선싱(licensing) 등. 단 이는 정규적이거나 계속적으로 행해질 때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으로 인정됨. 국세청은 이러한 종류의 활동이 상당히 근접한 시간적 간격(reasonably proximate intervals)으로 반복된다면 정규적(regular)인 것으로, 그 활동에 대한 두드러질 정도의 중지(cessation) 또는 중단(interruption)이 없다면 계속적(continuous)인 것으로 보고 있음.

#### 예시

리스 사업의 경우 ① 상업적 건물이 수 년 동안 임대되어 왔던 경우, ② 건물이 비어 있었으나 임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광고가 된 경우, ③ 남아 있는 건물의 부분이 개조된 경우에는 정규적이고 계속적으로 리스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별장을 일 년에 몇 주 가끔 임대를 하였다면 정규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이 아니지만 일 년 내내 임대를 위한 광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고, 실제로 일 년에 20주 동안 임대되었다면 정규적이고 계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미 건물 리스사업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임시로 비어 있는 기간에도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이 이전에는 임대된 적이 없지만 임대를 위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임대사업은 임대활동이 시작되어야(즉 최소한 한 임차인이 리스계약을 맺거나 건물을 점유해야지만) 개시가 되는 것이다.<sup>29)</sup>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3-020 참조.

29) GST Ruling GSTR 2002/5; see also Cyonara Snowfox Pty Ltd v FC of T 2012 ATC ¶20-362.

- ④ 세금 공제 대상 증여(tax-deductible gifts)의 적격 수령자인 단체의 활동
- ⑤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기금(complying superannuation fund)의 관리자(manager)나 신탁관리인(trustee)의 활동
- ⑥ 자선단체의 활동<sup>30)</sup>
- ⑦ 영연방(Commonwealth), 주(state) 또는 자치단체(territory)의 활동(정부 기관과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사업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일련의 활동이 있을 필요는 없고, 단일한 활동도 사업이 될 수 있다. 또 한 사업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일부는 사업이지만 일부는 사업이 아닌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시

- ① 자영업자인 의사가 이윤을 위해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 의사는 두 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의사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그 등록은 두 개의 사업 모두에 적용이 된다.
- ② 병원에 고용이 되어 있는 의사가 별도로 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고용은 사업이 아니지만 별도의 의사업무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될 것이므로, 만약 이 의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은 별도의 사업 활동에만 적용될 것이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3-020.

30) 자선단체의 활동은 일정 부분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 나. 사업의 개시 및 종료

납세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된다.<sup>31)</sup>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진지한 고려가 있는 경우 진정한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는 사업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 사업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와인산업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자 와인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어떤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홍보활동만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이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들 활동은 사업 개시 준비단계에서 행해진 단순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32)</sup> 신탁증서의 작성 및 신탁재산의 처분(settlement)과 같이 사업체(entity) 결성을 위하여 한 활동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sup>33)</sup>

계좌의 확정(finalising accounts), 채권자에 대한 지급(paying creditors), 부채의 상환(repaying loans), 면허와 사업자등록의 취소(cancelling licences and business), 또는 파트너십을 종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사업자신의 현금화 등과 같이 사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행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업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때,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 때,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장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정자산(capital asset)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의 의도에 대한 증거가 관련이 될 수 있다.<sup>34)</sup> 만약 납세자가 교육 및 숙박센터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어떠한 교육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극소의 수입만이 발생하고, 상업적 성격이

3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95-1.

32) *Guru 4 U Pty Ltd v FC of T* [2014] AATA 740; *Russell v FC of T* [2011] FCAFC 10.

33) *Miscellaneous Taxation Ruling MT 2006/1*.

34) *Russell v FC of T* [2011] FCAFC 10.

결여된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은 있다고 할 수 없다.<sup>35)</sup> 또한 토지구획사업에서 토지가 취득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sup>36)</sup>

#### 다. 사업(Enterprise)로 되지 않는 활동

피고용인(employee)이나 특정 PAYG 원천징수 규칙(회사 사장, 임원, 인력제 공업체(labour hire)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이 아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인적 여가활동의 추구나 취미는 사업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규모가 작고, 불규칙적이며, 이익추구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개인에 의한 활동 또는 대부분이나 전부 개인들로 구성된 파트너십에 의한 활동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이 아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 이상이 될 것을 요한다.<sup>37)</sup>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상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councillors)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성원에 의한 활동도 사업이 아니다.

#### 라. 상업(Business)의 의미

가장 일반적인 사업의 형태는 상업(business)이다. 일반적으로 상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의 논쟁이 없지만, 1차 생산(primary production), 저작활동(writing), 스포츠, 도박(gambling)과 같은 영역에서는 경계상황(borderline situations)이 발생하기도 한다.

35) Educational Pty Ltd v FC of T [2011] AATA 445.

36) Bryxl Pty Ltd v FC of T [2015] AATA 89.

37) Miscellaneous Taxation Ruling MT 2006/1; GST Determination GSTD 2006/6.

사업으로 보기 위한 지표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요도는 특정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 상당한 상업적 활동
- 상업적 방법으로 행할 목적
-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도
- 수익성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
- 활동의 반복 및 정기성
- 합당한 크기와 규모
- 정상적인 사업관행과의 일치
- 사업상 계획의 존재
- 상세한 사업상 기록의 보유
- 제품의 상업적인 판매
- 지식이나 기술의 행사<sup>38)</sup>

소규모로 행해지는 활동도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기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어떤 활동이 매우 소규모일 경우 그 활동이 임시방편(ad hoc manner)으로 행해지고 있고, 반복성이나 정기성이 거의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39)</sup> 예를 들어 개인이 가끔 번역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고 그 해 총 \$300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차량 이용 공유서비스(ride-sourcing services)를 대중들에게 제공한다면 사업을 행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개인과외교사(private tutor)는 그 활동이 소규모이고 지속적으로 이윤을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그 활동이 반복되고 체계적이며, 신뢰할 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도가 이익을 창출할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사업이 된다.<sup>41)</sup>

38) Taxation Ruling TR 97/11.

39)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3-020.

40) Miscellaneous Taxation Ruling MT 2006/1.

41) Case 3/2013, 2013 ATC ¶1-052.



### Ⅲ. 과세거래

1.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4. '부동산(Real property)'의 공급
5. 기타





## Ⅲ. 과세거래

### 1 |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

#### 가. 과세대상 공급의 의미

부가가치세는 모든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sup>42)</sup>과 과세대상 수입(taxable importation)에 대하여 부과된다. 사업체가 과세대상인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sup>43)</sup>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공급은 대가를 받고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그 공급은 공급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업과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그 공급은 호주(간접세 구역(indirect zone))와 관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당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공급은 과세 제외나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이란 판매(sale)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폭넓은 범위의 거래를 다루고 있다. 개별 공급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시기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는 어떤 사건에서 귀속을 발생하게 하는 때 중에서 빠른 시기이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간편화하거나 단순화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은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급

4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40.

4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5.

- ③ 자문(advice)이나 정보의 제공
- ④ 부동산의 수여(grant), 양도(assignment), 또는 포기(surrender)
- ⑤ 권리의 창설(creation), 수여(grant), 이전(transfer), 양도(assignment) 또는 포기(surrender)
- ⑥ 금융 공급
- ⑦ ㉠ 어떤 것을 해야 할 ㉡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 어떤 행위 또는 상황을 수인할 의무로 나아가거나 그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
- ⑧ ①에서 ⑦까지의 항목에서 둘 이상의 것의 혼합

통상적으로 공급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적용대상이 되며, 공급이 합법적인 것이건 불법적인 것이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모두 부과된다. 공급되는 것이 수익자산(revenue asset)인지 고정자산(capital asset)<sup>44)</sup>인지에 따른 차이는 없다.

## 나. 공급의 정의

공급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한 사업자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써, 공급자가 어떠한 행위나 상황을 수인함으로써 마치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공급이 되는 것처럼 공급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sup>45)</sup> 그러므로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도 소비의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공급이 될 수 있다.<sup>46)</sup>

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sup>47)</sup>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공급자의 경우, 관련된 거래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두 개의 공급을 하는 공급자와 관련된다.

44) 영업권(going concern)의 판매에 대한 면제 등 일부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

45) FC of T v MBI Properties Pty Ltd [2014] HCA 49.

46) GST Ruling GSTR 2001/4.

47) 예를 들어 리스(lease).

첫째는, 계약체결 당시에 일어나는 공급(이행에 대한 계약적 권리의 창설과 그에 상응하는 이행을 할 계약적 의무의 발생이라는 형태로)이고, 둘째는, 계약 이행 시에 발생하는 공급이다. 이것은 계약적 이행이 공급자가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어떤 상황을 수인할 것을 계약적 의무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sup>48)</sup>

공급이란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한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에게로 이전(pass)되는 것이다.<sup>49)</sup> 회사의 지점(branch)은 그 지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지점(GST branch)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그 회사에 대해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지점이 회사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은 공급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거래가 둘 또는 그 이상의 공급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이 장애인 고객에게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는 택시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는 택시회사가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공급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급으로 나뉘질 수 있는 것이다.

의무부담(Entry into an obligation)이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초가 되는 거래와는 별개로 독립된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sup>50)</sup>

#### 다.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공급

과세대상 공급의 두 번째 요건인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공급”에서 ‘대가(consideration)’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가장 간단한 예로 돈을 받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의 대가란 지불금(payment)이다.

대가란 어떤 것을 하기로 하는 작위나 어떤 것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상황에도 적용이 된다. 만약 그것이 ① 공급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이것은 폭넓

48) FC of T v MBI Properties Pty Ltd [2014] HCA 49.

49) GST Rulings GSTR 2001/4; GSTR 2006/9.

50) GST Ruling GSTR 2001/6.

게 해석됨), ② 공급에 대응하여 이루어지거나, ③ 공급을 유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면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된다.

대가는 반드시 재화나 공급의 수령에 의하여 제공될 필요는 없다. 즉 제3자에 의해서 제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불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거나 공급자에 대해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없다.<sup>51)</sup> 그러나 이러한 경우 공급과 제3자에 대한 지불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음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예 시

- ① K회사는 할부판매약정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구매자는 구매가액을 할부금융회사에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할부금융회사는 여전히 K회사에 대하여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불은 K회사의 차량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된다.
- ② 법률회사와 관련 있는 서비스신탁이 고객에게 절세전략을 제공하였다. 고객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신탁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신 그 신탁과 관련이 있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 경우 이것은 대가를 받은 과세대상 공급이 된다.<sup>52)</sup>
- ③ 정부는 대중교통회사가 승객에게 할인을 할 경우에 그 할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지원금(reimbursement)이 승객에게 제공된 요금의 할인액과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 법원은 이 지원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회사가 받은 대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sup>53)</sup>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020.

51) TT-Line Company Pty Ltd v FC of T 2009 ATC ¶20-157; GST Ruling GSTR 2006/9.  
 52) Keenhilt Pty Ltd v FC of T [2007] AATA 2095 참조.  
 53) TT-Line case 참조.

대가가 반드시 적정해야 한다거나, 상거래상의 요금 비율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공급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는 요건은 공급과 대가 사이에 연결 또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계약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sup>54)</sup>

어떤 협회와 협회 구성원의 경우 구성원이 협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은 대가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클럽 멤버십 가입(membership subscriptions)은 멤버십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될 수 있다.

#### 예 시

- ① 사업자등록이 된 주택지구의 사단법인은 각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주택지구 사단법인(body corporate)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취급될 수 있다. 사업자 요건에서 사단법인(body corporate)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sup>55)</sup> 그러나 이 사단법인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계약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어떤 클럽의 멤버십에 가입하기 위해서 H는 멤버십 회원비와 그 클럽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였다. 이 멤버십 회원비에 더하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을 무이자로 사용하게 한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가 멤버십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sup>56)</sup>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020.

54) FC of T v Qantas Airways Ltd [2012] HCA 41.

55) Body Corporate, Villa Edgewater Courts 23092 v FC of T 2004 ATC 2056.

56) Interpretative Decision ID 2003/4; 또 Exeter Golf and Country Club Ltd v Customs and Excise Commissioners (1981) 1 BVC 385 참조.

## 2 | '재화'의 공급

재화(Goods)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유형 개인 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포함한다.<sup>57)</sup> 그러므로 재화는 거래 주식, 식물, 장비, 음식, 자동차와 원료(raw materials)를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부동산 지분, 무형자산(계약권, 영업권, 저작권, 상표권 등)은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sup>58)</sup>

재화의 공급(Supply of goods)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호주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 호주 내에서만 전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그 재화는 호주에서 운반되거나 만들어진다면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sup>59)</sup>
- 호주로부터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그 재화는 그것이 호주로부터 이탈될 때(수출로 인한 면세 제외)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 호주로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그 재화가 ① 공급자가 호주로 그 재화를 수입하거나 ② 그 공급이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 재화(low value goods)의 역외 공급(offshore supply)이라면 호주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금전(Money)의 공급은 호주통화이든 외국통화이든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아니다.<sup>60)</sup> 액면가로 통화(currency)를 취득하는 것은 그 취득이 수집품(collectibles)으로 통화를 재판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화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sup>61)</sup> 그러나 수집품(collectibles)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되는 지폐나 동전은 재화에 포함한다.<sup>62)</sup>

57) 호주 부가가치세법 §195-1(용어 정의 규정).

58)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6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34-105.

59) 호주 국세청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운반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GSTR 2000/31).

60) *Travel Ltd v FC of T* [2010] HCA 33.

61) Interpretative Decision ID 2006/202.

62) 금전의 공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5. 기타에서 서술된 금전의 공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재화가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패키지로 판매가 되면 통상적으로 재화로 취급된다.<sup>63)</sup> 규격품(Off the shelf) 소프트웨어가 CD-ROM과 같은 유형적 매체에 담겨서 제공된다면 특정한 사용권이 이 제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된다.<sup>64)</sup> 그러나 다운로드되거나 전자 우편에 의해서 전송되는 소프트웨어는 재화가 아니다.<sup>65)</sup>

국세청은 어떤 한 고객을 위하여 개발되는 일회성(one-off)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만약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생산 시에 고객에게 귀속되면(이는 그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달되든 디스크상으로 전달되든 마찬가지)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래머가 일단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고객에게 배정되도록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고객이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공급은 혼합 공급(mixed supply)이 된다. 즉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수여로 공급이 구성되는 것이다. 저작권 수여는 권리의 공급이지만, 프로그램의 공급은 그러하지 않다. 프로그램의 공급은 그것이 디스크상의 유형적 형태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sup>66)</sup> 만약 재화가 리스 방식으로 공급되면 이것은 그 물건을 사용할 권리의 공급이라기보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취급된다.

63) GST Ruling GSTR 2003/8; Toby Constructions Products Pty Ltd v Computa Bar (Sales) Pty Ltd [1983] 2 NSWLR 48.

64) Taxation Ruling TR 93/12; GST Ruling GSTR 2003/8.

65) ASX Operations Pty Ltd v Pont Data Australia Pty Ltd (1990) 97 ALR 513; GST Ruling GSTR 2003/8.

66) GST Ruling GSTR 2003/8.

### 3 | '용역'의 공급

호주 「부가가치세법」상 정의규정에 용역(service)에 대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용역, 디지털 제품, 권리, 자문 또는 의무와 같은 것을 그 외 다른 공급이라고 칭하며 과세가능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다.

용역<sup>67)</sup>의 제공은 만약 ① 그것이 호주에서 행해지거나 ② 공급자가 호주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하거나 ③ 권리 또는 어떤 다른 것을 취득할 선택권(option)의 해외 공급(offshore supply)이 있고, 그 제공이 호주와 관련이 있을 경우 또는 ④ 2017년 7월 1일 이후로부터 시작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그 공급의 수령자가 '호주 소비자'인 경우에는 호주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위에서 ③의 경우 권리 또는 어떤 다른 것을 취득할 선택권(option)의 해외 공급(offshore supply)은 그것의 공급이 호주와 관련이 있으면 호주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이 규정은 주로 호주 거주자인 여행 도매업자로부터 호주 패키지 여행상품(package holidays)을 취득한 후 관광객들에게 대신 공급하는 비거주자인 여행 사업자(tour operators)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의 경우 호주 소비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은 되었지만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러한 공급을 취득하는 호주의 거주자를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해외로부터 제공되는 일부 용역이나 권리는 그것이 호주와 연관되지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공급에 대한 대가가 호주 조세, 수수료 또는 요금이라면 그 공급은 그것이 호주와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sup>68)</sup>

67) 디지털 제품, 권리, 조언(advice), 의무(obligations)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81-10.

#### 4 | '부동산(Real property)'의 공급

부동산의 공급은 만약 그 부동산이 호주 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만약 그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토지가 호주 내에 있다면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부동산이란 토지에 대한 권리, 지분, 옵션(options), 라이선스를 포함한다. 그래서 만약 어떤 자가 호주 내에 있는 토지를 점유할 라이선스를 가진다면 그 라이선스는 호주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호주에 있는 거처(accommodation)를 점유하거나 머물 수 있는 계약적 권리의 수여에도 적용될 수 있고, 상품권 또는 여행문서를 제시하여 호텔이나 모텔에 머무르는 것도 포함한다.<sup>69)</sup>

#### 5 | 기타

가. 유의해야 할 공급의 형태 및 법령에 의해 과세대상 공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기증(Gifts; 선물)

기증(gifts)은 물질적 이익 없이 자발적으로 이전되는 것<sup>70)</sup>으로 대개 비사업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선단체에 멤버십 회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자는 멤버십 권리를 수여받기 때문에 이것이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증(gifts)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장학금은 명백히 기증(gifts)으로 취급된다.

69) GST Ruling GSTR 2018/1.

70) FC of T v McPhail(1968) 17 CLR 111; Taxation Ruling TR 2005/13.

재화 또는 용역이 기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증자가 기증자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요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2) 팁(Tips)

식당 사업주는 서비스요금(service charges)과 미리 정한 추가요금(pre-set extras)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지만, 식당 고용인에게 개인적으로 지불된 순수한 팁은 납부의무가 없다. 만약 팁(tips)이 신용카드로 지급되었을 경우 그 금액이 실제 그것을 받아야 할 자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반드시 상업 장부로 기록되어야 한다.<sup>71)</sup>

사업자등록된 택시운행자에게 지불된 팁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만, 클럽 후원자(club patrons)를 위한 셔틀버스 서비스와 같은 무료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클라우드 펀딩 약정

클라우드 펀딩은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특별한 사업 벤처를 위하여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형적으로 그 프로젝트 또는 벤처의 기획자는 잠재적인 자금제공자와 기획자를 연결하게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중개인으로 관여를 한다.

호주 국세청은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72)</sup>

71) TO GAT Industry Issues — Tourism and Hospitality: Issue 26.

72)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030.

첫째, 만약 자금제공자가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별도로 아무것도 대가를 받지 않고 지급한다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이 기획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고, 기획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만약 자금제공자가 대가로 무료의 재화 또는 서비스 같이 의미 있는 어떤 것을 받으면, 그 기획자는 그것이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러한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자금제공자는 만약 공제가능 취득에 대한 일반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인은 기획자에게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 기획자는 이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약 자금제공자가 대가로 회사의 주식과 같은 기획자의 자산 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 주식은 면세 재화(input taxed)의 공급이 되어 자금제공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개인은 기획자에 대하여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되고, 기획자는 금융상 취득 기준 테스트(financial acquisitions threshold test) 같은 특혜적 규칙(concessional rule)을 충족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만약 자금제공자의 지급액이 이자와 더불어 다시 상황이 된다면, 자금제공자와 기획자는 둘 다 면세 금융상 공급에 해당하게 된다. 중개인과 기획자의 관계는 위의 세 번째 경우와 같다.

#### 4) 판매 장려금(Marketing incentives)

소매업자가 특정한 제조업자의 상품 또는 도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 대한 장려금으로 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소매업자에 의하여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된다.

5) 감사 선물(Token of appreciation)

회의의 기획자가 발표자(speaker)에게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발표자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취급되지 않는다.<sup>73)</sup> 책, 와인 한 병 또는 꽃다발 등이 선물의 예가 된다. 단, 발표자가 그것을 요청하였거나, 받을 것을 예견하였거나,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선물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 선물도 대가로 취급될 수 있다. 감사 선물이 대가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다음이 고려될 수 있다.

- 다른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매우 다른 경우
- 발표자에게 제공되는 또 다른 비금전적 발표비를 보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비금전적 수수료가 휴대용컴퓨터(laptop)고, 감사의 표시는 보완적 소프트웨어인 경우 그 감사의 표시는 추가적인 대가로 간주될 수 있음
- 기획자의 동기
- 이러한 종류의 업무에서 발표자 또는 다른 유사한 발표자에게 지급되는 발표비를 고려해보았을 때 감사 표시의 가치가 합리적인 것을 초과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발표자가 상당한 발표비를 포기하고, 대신 발표자의 사업과 관련되는 발표비 상당의 아이템을 받을 경우 그 감사의 표시는 대가로 취급될 수 있음<sup>74)</sup>

발표자의 숙박, 교통, 식사비용은 발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대가가 아니지만, 그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다면 대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회의기간 외의 기간에 지급되는 비용 또는 발표자의 가족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이 그러하다.<sup>75)</sup>

73) GST Determination GSTD 2002/5.

74) *Id.*

75) *Id.*

## 6) 판촉활동(Promotions)

특별 할인시간대 주류의 판촉활동(“Happy hour” alcohol promotions)은 할인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증정되는 무료 술은 통상적으로 지불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식당이 식사비용을 지불하는 손님에게 추가적인 메인코스(또는 와인 한 병)를 제공하는 경우, 하나 사면 하나는 공짜인 할인행사(buy one, get one free)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청구된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메인코스 또는 와인의 명목상 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7) 장물(Stolen property)

사업에서 자산이 도난당한 경우 제공된 대가가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 공급이 아니다. 만약 절도자가 나중에 재화에 대하여 지불을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공급이 될 것이다.

만약 사업자가 이전의 과세대상 공급의 이익인 매출액을 강탈당한다 해도 그러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그 사업이 보험약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그러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택시의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승객에 대한 택시운송서비스의 공급은 대가가 없어서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 8) 대회(Competitions)

대회(Competitions)에 대해서는 3가지 다른 유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자선단체의 래플(특정 프로젝트기관의 기금 모금을 위한 복권)

과 빙고는 그것이 관련 주(州)법 또는 지방법 규정에 부합된다면<sup>76)</sup> 부가가치세 적용이 배제된다(GST-free).<sup>77)</sup>

두 번째 유형, 복권, 래플, 게임, 경마,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을 포함한 상업적 사행행위(gambling)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sup>78)</sup>

세 번째 유형으로, 위의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대회에는 부가가치세법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공급이 있는데, 만약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을 할 경우 ① 기획자가 대회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참여자가 입장료 또는 다른 대가를 지불한 경우<sup>79)</sup>), ② 참여자에 의한 참여의 공급(참여자가 상과 같은 대가를 받은 경우<sup>80)</sup>), ③ 기획자의 (비금전적) 상(prizes)의 제공<sup>81)</sup>(우승자의 우승 노력을 구성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가능 공급이 됨<sup>82)</sup>)이 그러한 공급이다.

9) 보조금(Grants)·정부지출금(appropriations)<sup>83)</sup>·장려금(subsidies)·재정후원(sponsorships)

통상적으로, 금전(money)의 지급은 그 자체가 공급이 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그 지급에 대한 보답으로 금전을 수령한 자에 의한 공급이 있다면, 그 금전이 그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수령자는 만약 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고, 통상적 부가가치세 규정

7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270.

77)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5-020.

78) Div 126.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6-000.

79) GST Ruling GSTR 2002/3.

80) *Id.*

81) *Id.*

82) 상이 금전일 경우, 돈은 통상적으로 공급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83)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가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가 할당한 자원.

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그 지급액의 10%가 될 것이며, 금전 지급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보조금, 장려금, 재정후원, 재정지원, (보험 또는 연금에서) 고용인 부담, 리베이트와 같은 지급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이 수령자에 의한 공급에 대한 지급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지급과 공급 사이에 충분한 연계(nexus) 또는 관계(connection)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테스트는 객관적인 테스트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통칙(GST Ruling: GSTR) 2012/2에 따르면 지급에 대한 대가로 다음의 경우에 충분한 연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지급자가 수령자의 작업 결과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 받을 경우<sup>84)</sup>
- ② 지급자가 지급에 대한 대가로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그러나 이것은 해당 정보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③ 수령자가 지급자가 의욕하는 대로 어떤 것을 해야 하거나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약정을 지급자와 체결하는 경우<sup>85)</sup>
- ④ 수령자가 홍보물(promotional material), 프로그램, 제복(uniform)을 통하여 지급자의 사업을 촉진하거나 행사 또는 미디어에서 사업을 광고하는 경우. 그러나 이는 수령자가 그러한 원조의 출처를 단순히 표시하는 경우 (예를 들어 명판(plaque)상 표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령자가 지급자의 요건을 따르지 않아 지원받은 것을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지급이 공급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는 고려되어야 할 전체 상황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는 있다.

84) 예를 들어, 보건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의학연구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85) 예를 들어 예술단체가 벽지(remote areas)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에 조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10) 교환 가능한 상품권(Redeemable vouchers)

상품권에 표시된 금액만큼 다른 공급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vouchers), 선 물권(tokens), 소인(消印: stamps), 쿠폰(coupons)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sup>86)</sup> 이러한 것들은 흔히 액면가 상품권이라고 불리는데, 전형적 인 예가 소매점에서 그 소지자에게 명시된 액면가만큼 그 상점에서 물건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을 소지자에게 가지도록 하는 상품권과는 구별된다.<sup>87)</sup>

특별규칙에 따르면 상품권의 최초의 공급은 과세대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 가치세가 적용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sup>88)</sup> 그러나 상품권이 교환되어 관련 재화나 용역이 제공된다면 그때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sup>89)</sup> 이 러한 공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세법상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이에 대하여 특별규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발행 시에 상품권은 교환 시까지는 다른 부가가치세법상 의미있는 다른 종류의 공급으로 교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상품권을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상품권의 액면가에 교환 시 공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대가를 더한 금 액에 상응하는 대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만약 상품권이 부분적으로 재화나 용 역으로 교환되고, 부분적으로는 현금으로 환급된다면 교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는 액면가에서 환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만약 상품권이 교환이 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그 교환에 대한 유보액을 현 재 수입으로 수정할 때에 증가된 부가가치세 조정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sup>90)</sup>

8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00-5; 100-25.

87) 예를 들어 도난상품을 대신하여 제공되는 물품의 경우.

8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00-5(1).

8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00-10.

9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00-15.

상품권이 부분적으로 교환될 때에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교환되지 않은 액수에 근거하여 조정한다. 조정은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제외상품으로 교환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특별규칙은 우표(postage stamps)에는 적용되지 않고,<sup>91)</sup> 일반 버스표, 영화표, 항공탑승권과 같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티켓이나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규칙은 공급이 어떻게든 간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면세되는 금융상 공급으로 취급되는 여행자수표의 공급과 같은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특별규칙은 광범위한 선불전화카드 또는 설비(facilities)에는 적용된다. 적용받기 위해서 카드 또는 설비는 전화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서비스에 의하여 용이하게 취득되도록 할 주된 목적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유사한 서비스에는 휴대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문자(text), 그래픽, 이미지, 소리, 비디오, 정보, 소프트웨어 콘텐츠, 전자 우편을 포함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 인터넷 접근 서비스가 포함된다. 만약 상품권이 묶음세트(bundled kit)의 한 부분으로 공급된다면,<sup>92)</sup> 이것은 복합공급이 되어 과세 가능한 부분과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야 한다. 신용거래기능(credit facility)을 가진 전화카드(phone cards)는 면세 금융 공급이고 상품권이 아니다. 은행계좌와 연결된 선불카드(stored value cards)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배달 접근비용 또는 대여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요금제에 따라 전화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휴대폰 계좌도 상품권이 아니다.

#### 11) 마일리지(Frequent flyer, shopper and loyalty programs)

상점들은 단골고객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구매에 따라 점수(points)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수가 일정 액수에 도달하면 고객은 그 상점에서 다른 재화

9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00-25.

92) 예를 들어 휴대전화, 유심카드(SIM card), 그리고 상품권에 의해서 사용가능한 전화서비스에 대한 권리.

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호주 국세청은 이러한 점수의 수여나 그 점수의 교환 시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대가가 없기 때문이다.<sup>93)</sup> 그러나 고객이 그런 재화 또는 용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액수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다.<sup>94)</sup> 부가가치세는 또한 그러한 단골고객 프로그램의 멤버십에 대하여 지불하는 요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같은 규정이 마일리지 서비스(frequent flyer programs)나 그에 맞먹는 고객보상프로그램(loyalty programs)에도 적용된다. 고객보상프로그램의 운영자가 그 프로그램의 파트너에게 점수 요금(point fee)을 청구할 경우 추가적인 요소가 적용된다. 이러한 요금은 운영자가 파트너에게 점수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다고 호주 국세청은 보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은 그 점수가 교환될 때 이루어지는 공급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에 따른다. 예를 들어 만약 점수가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교환된다면, 운영자에 의한 그 점수의 공급 또한 과세가 된다. 반면에 점수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여행으로 교환된다면, 운영자에 의한 그 점수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 적용 제외가 된다.<sup>95)</sup>

만약 점수가 상품권으로 교환된다면, 그 상품권이 과세대상 공급으로 교환되는 한도에서 과세대상 공급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 상품권 공급 그 자체가 위 10)에서 설명된 규칙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공급이 된다.<sup>96)</sup>

## 12) 취소 수수료(Cancellation fees)

고객이 예정된 공급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가로 취급될 것이고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호주 국세청은 예정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93)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062.

94) GST Ruling GSTR 2012/1.

95) *Id.*

96) *Id.*

취소 수수료가 대가로 취급되는 데 대한 다른 공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97)</sup> 이러한 다른 공급이란 취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공급을 준비하거나, 취소 당시에 진행 중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가 취한 행위를 포함한다.

### 13) 보증금(Security deposits)

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 지급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sup>98)</sup>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거래는 첫째, 재화의 임대(hire of goods)를 위한 계약에서 공급자가 그 재화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보유하는 경우이거나, 둘째, 부동산 또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을 위한 계약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완료할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만약 보증금이 의무 이행 시 환급된다면, 그 보증금은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sup>99)</sup>

### 14) 과태료(Fines)·벌금(penalties)·세금(taxes)·요금(charges)

처벌 또는 제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Fines)나 벌금(penalties)은 통상적으로는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벌금이 비디오 대여에 대한 연체료와 같이 상업적 계약에 따라 부과되거나 계약 불이행자(defaulter)가 벌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추가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부가가치세가 정부기관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화와 공급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정부의 세금, 부담금 및 정보관련 수수료(information-related fees)는 그것들이 관계되는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공급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97)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065.

9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 99.

9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9-5.


15) 법원 명령에 의한 화해 및 법정 밖 화해(out-of-court settlement)

법원 명령에 의한 보상금(court-ordered compensation)이나 법정 밖 화해금(out-of-court settlement)은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될 수 있다.<sup>100)</sup>

호주 부가가치세법상의 통상적인 과세대상 공급 규정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① 원고(plaintiff)가 사업자등록이 되었거나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② 공급이 원고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③ 공급이 호주와 연관되어 있고, ④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이거나 면세가 아니라면 그 공급은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지급액이 과세 대상 공급이라면, 수령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며, 지급자는 통상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Damages awards) 그 자체는 법원에 의해서 과세대상인 공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sup>101)</sup>,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에 의하면 일정한 화해금은 당사자에 의한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통칙, GST Ruling GSTR 2001/4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 관련 공급은 ① 분쟁이 발생한 거래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급(이것을 이전 공급(earlier supply)이라고 함), ② 화해 그 자체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급(예를 들어 화해(settlement)결정문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가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제공하도록 할 경우(이것을 현재 공급(current supply)이라고 함)를 포함한다고 한다.

 예시

① 법정 밖 화해(out-of-court settlement)에 따라 D는 R에 의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공급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화해금은 그 이전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급된다. 만약 과세대상 공급에 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10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15(2A).

101) Interchase Corporation Ltd v ACN 010 087 573 Pty Ltd & Ors 2000 ATC 4552; Gagner Pty Ltd v Canturi Corporation Pty Ltd [2009] NSWCA 413; Taxation Ruling TR 2001/4.

② 상품명의 사용에 대한 분쟁의 결과로, M은 N에게 장래에 그 이름을 쓸 권리를 허락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것은 현재 공급이 되고, 만약 과세대상 공급에 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085.

그러나 호주 국세청은 명령이나 화해가 이전의 재산적 손해, 이윤에 대한 손실을 발생토록 하는 과실(negligence causing loss of profits), 저작권 위반, 신체적 상해(personal injury), 계약의 종료나 위반에 대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종결하는 것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다. 이것은 비록 지급액이 장래에 상품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이루어져서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는 현재 공급이 된다 할지라도, 상품명(trade name)의 부정사용에 대한 화해에도 적용된다.

#### 16) 금전(Money)의 공급

금전(Money)의 공급의 경우, 어떤 것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지만, 다른 금전의 공급의 대가로 금전이 지급된다면 공급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서 외환거래 또는 수표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현금화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금전(Money)은 통화(currency),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환어음(bills of exchange), 통화로 사용하기로 한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우편환(postal notes), 소액환(money order), 신용카드나 현금카드에 의한 지급 등을 포함한다.<sup>102)</sup>

10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95-1.

2017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공급에서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은 금전과 같이 취급된다.<sup>103)</sup> 디지털 통화의 공급은 그것이 부채거래(debt trading)나 외환투기(foreign currency speculation)에서 처럼 또 다른 금전 또는 디지털 통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공급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상의 취급은 디지털 통화를 무형자산으로 다루던 이전의 관행을 뒤집는 것이다.<sup>104)</sup>

### 나. 수입거래

재화가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해외 공급자가 아니라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sup>105)</sup> 이는 수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사업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인 수입가격의 10%로 계산되는데, 과세대상 수입가격은 다음 표에 있는 것들을 더하여 계산된다.

표 III-1 수입 과세가격(Value of the Taxable Importation: VOTI)의 계산

항목	유형	내용
1	재화의 관세가격(customs value)	호주의 세관이 결정한 재화의 수입 시 가격 수출지에서의 부가가치세·운송비·보험료 제외
2	국제 운임료	호주 내의 배송지로 운송하기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예정인 국제 운임
3	운송 보험료	위의 국제 운송을 위하여 재화에 대한 보험에 대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예정인 금액

10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89-10(4); 9-85(2).

104) 이전의 관행은 사용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두 번-통화의 구입 시 한 번,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할 때 사용 시에 다시 한 번- 부담하게 하였다. 이는 호주에서 금융기술분야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서 그 취급을 바꾼 것이다.

10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3-15.

〈표 III-1〉의 계속

항목	유형	내용
4	영세율 적용 국제운송 과정에서 재화의 적재·처리 또는 재화가치 증진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예정인 금액	재화가치증진서비스(facilitation service)의 예로는 훈증(fumigation)이 있음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 §81-5에 따라 면제되는 세금, 수수료,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5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관세	
6	재화의 지역반입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와인균등세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9-005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

수입 과세가격(VOTI)에는 조립서비스 또는 설치서비스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표 III-1〉의 2에서 4까지의 각 항목은 재화의 관세가격처럼 앞의 항목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에만 적용된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과세대상 수입에 대해서 수입자는 〈표 III-1〉의 2에서 4까지의 운임·보험·적재·처리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수입재화의 관세가격의 10%로 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가격이 \$130,000이면, 이들 비용을 \$13,000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들 비용에 대한 송장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에 매우 유용하며, 그 비율은 규칙에서 정해진다.<sup>106)</sup> 이 방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자동차의 수입 또는 와인의 지역 반입과 관련된 과세대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비와 보험료가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화가 수입된 날의 고시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이외에 수리를 위해 해외로 반출되었던 재화의 수입 및 비거주자의 역외 공급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의 X. 기타, 2.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규정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106)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9-005.



## IV. 과세표준

1.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
2.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3. 기타





## IV. 과세표준

### 1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

#### 가. 개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가치이며 재화의 가격, 즉 공급 대가의 10/11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가격의 10%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급에 대한 지불대가가 금전 이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면 그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물건의 시장가격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수집가의 수집품이거나 액면가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지폐나 동전은 금전으로 취급되지 않고 부가세가 포함된 시가로 평가된다. 만약 공급이 시가 미만이나 특수관계인(associate)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시가가 지불된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계산된다.

#### 나. 혼합공급(Mixed supplies)과 합성공급(composite supplies)

만약 공급의 일부분은 과세대상이고 일부분은 과세 제외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은 비례적 가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다.<sup>107)</sup> 이것은 공급의 일부는 과세대상이고, 일부는 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건물의 리스가 면세되는 거주용 장소와 과세되는 상업용 장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편의상 이러한 공급을 혼합공급(mixed supplies)이라고 한다.

10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80. 가치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실제 공급 가격 × 10)/(10 + 과세가능 비율)」. 과세가능 비율(taxable proportion)이란 과세대상 공급의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공급이 가치의 비율로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된다.

 예시

어떤 거래에서 \$210에 공급이 이루어졌다. 과세가능 비율은 전체 가치의 50%이다. 부가가치세 목적상 총공급의 가치는  $(\$210 \times 10) / (10 + 0.5) = \$200$ 이므로, 과세대상 공급의 가치는 \$200의 50%인 \$100이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00의 10%인 \$10가 된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200.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공급의 일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분리하여 확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그 공급에 내재적이거나(integral), 부수적이거나(ancillary) 보조적인(incidental)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급을 합성공급(composite supplies)이라고 하는데,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공급이 혼합공급인지 합성공급인지는 사실과 정도의 문제이며, 특정한 부가가치세법 규정들을 고려한 후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sup>108)</sup> 공급되는 것의 본질적인 성격을 확정하는 것이 특정한 거래가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항공권은 기내 식사(in-flight meal)의 제공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식사는 통상적으로 운송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취급된다.<sup>109)</sup> 그러므로 그 공급은 합성공급이 되고 과세가능 부분과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예로 철도회사가 특별한 식도락 여행(special gourmet excursions)을 고가에 제공할 경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여행의 부분으로 강하게 홍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음식과 운송의 혼합공급으로 각각은 구별되어야 한다.<sup>110)</sup>

호주 국세청은 만약 한 요소가 가치 또는 기능 면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공급의 지배적인 부분을 단순히 보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재적, 부수적, 또는 보조적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그 요소에 구별될 대가가 \$3 또는

108) FC of T v Luxottica Retail Australia Pty Ltd 2011 ATC ¶20-243; [2011] FCAFC 20.

109) British Airways plc v Customs and Excise Commrs [1990] 5 BVC 97.

110) Sea Containers Ltd v Customs and Excise Commrs [2000] BVC 60.

총대가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수재화로 보고 있다.<sup>111)</sup>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가 철저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sup>112)</sup>

표 IV-1 혼합공급(Mixed supplies)과 합성공급(composite supplies) 예시

구별을 요하지 않는 합성공급의 부수재화의 예	구별을 요하는 혼합공급의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부분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청기의 부분으로 제공되는 청소용 솔</li> <li>• 자동차의 부분으로 제공되는 장착된 타이어</li> <li>• 병원 환자들에게 추가적 요금 없이 제공되는 신문</li> <li>• 방 숙박 시 제공되는 청소·운송 서비스</li> <li>• 시리얼 묶음과 함께 제공되는 스티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기숙사생에게 제공되는 음식</li> <li>• 할인된 가격으로 함께 판매되는 커피 플런저(plunger)(과세가능)와 커피 병(jar)(과세 제외)</li> <li>• 고가의 건강보험 구매 시 제공되는 체육관 멤버십</li> </ul>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200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한 것임.

판매된 재화의 배송은 통상적으로 혼합공급의 개별적으로 구별 가능한 부분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고객은 요금을 지불하고 배송을 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배송 서비스는 물건 그 자체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과는 관계없이 과세 가능하다.

배송이 합성공급의 부수적인 부분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 메일 주문 또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주문했을 때 공급자가 물건의 수령 장소를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배송은 그 공급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배송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은 주문한 물건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만약 그 물건이 과세 제외이면, 배송도 그러하고, 만약 물건이 부분적으로 과세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과세 제외라면 배송 또한 그러하다.<sup>113)</sup> 같은 규칙이 포장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11)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200.

112) GST Ruling GSTR 2001/8.

113) GST Determination GSTD 2002/3; Customs & Excise Commissioners v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1999] 3 All ER 961.

**예 시**

T는 신선한 과일(\$44, 과세 제외)과 꽃(\$22, \$2 부가가치세 포함)을 인터넷 식료품점에서 주문하였다. 공급자가 제공한 수령(pick-up) 장소는 없었고, 배송 비용은 \$11이다. 배송 비용의 부가가치세 요소는  $1/11 \times \$11 \times 22/66 = \$0.33$ 이 된다. 그러므로 식료품점의 총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2.33이다.

만약 배송이 선택적이었다면, 그 배송은 전부 과세 가능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요소는  $1/11 \times \$11 = \$1$ 이다. 그러므로 식료품점의 총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3이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200.

## 2 |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수입의 경우 수입품의 가격의 10%로 계산이 된다. 그 가치란 CIF(customs, insurance, freight)가치이다. 수입부가가치세는 관세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청에 납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특별한 부가가치세 납부이연계획(Deffered GST Scheme)을 통하여 수입재화가 본국 소비를 위하여 반입된 후 첫 기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가 제출될 때까지 부가가치세를 이연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연은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같은 신고서에서 요청될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상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선불로 납부해야 하는 현금 흐름상의 불이익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의 가치는 조립 또는 설치 용역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 3 | 기타

#### 가. 과세표준의 변경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이 신고된 경우에도 그 후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또는 신청할 매입세액 공제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신고한 것을 조정(adjustments)할 필요가 있다.<sup>114)</sup>

조정(Adjustments)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가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의 변화(이것을 ‘조정 사건(adjustment event)’이라고 함)<sup>115)</sup>, ② 회수불능이 되거나 연체된 부채(debt)<sup>116)</sup>, ③ 사용목적(intended use)에서의 변화<sup>117)</sup>, ④ 사업 시작·이전 또는 종료와 관련된 변화 또는 사업자등록 지위변경, ⑤ 다른 다양한 조정(예를 들어, 대리인, 그룹, 조인트 벤처, 재산 병합과 관련된 약정, 매입세액 공제의 연간 배분, 그로스 업(gross-up) 조항)이다.

이 중 ①에서의 조정사건이란 공급 또는 취득의 취소, 공급 또는 취득의 대가 변경, 공급 또는 취득이 과세대상 공급 또는 매입공제가 가능한 취득(혹은 반대로도 가능)이 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지는 사건을 말한다.<sup>118)</sup>

조정은 순부가가치세액(net GST)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만약 조정이 순부가가치세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면 증가조정(increasing adjustment: IA)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공급에서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거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줄이는 것이다.<sup>119)</sup> 또 조정이 순부가가치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면 감소조정(decreasing adjustment: DA)이라고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공급에서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거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114)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6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34.145.

11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19.

11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21.

11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126, 130.

118) 사건의 분류에 대해서는 GSTR 2000/19 참조.

11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9-50, 19-75, 19-80.

늘리는 것이다.<sup>120)</sup>

조정은 납세자가 그것을 알게 된 과세연도에 귀속된다.<sup>121)</sup> 즉 부가가치세 결과가 실현되었던 아니던 간에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귀속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수불가능하거나 연체된 부채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만약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납세자는 실제로 공급대가를 받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 실제로 공급대가가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초과 납부된 것이다. 이 경우 납세자는 부채가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상각되는 그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감소하는 감소조정을 할 수 있다. 감소액은 상각된 액수의 1/11이다.<sup>122)</sup>

만약 부채의 일부분이 12개월 이상 동안 연체되었다면 실제 상각 여부에 관계 없이 조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감소액은 미상환액의 1/11이다. ‘연체(Overdue)’란 채무자가 부채를 갚아야 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만약 부채의 일부나 전부가 나중에 상환되면 그 나중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증가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증가액은 상환받은 금액의 1/11이다.<sup>123)</sup>

사업자가 미상환 고객 채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insurance policy)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위의 증가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값지 않은 고객을 대신하여 그 부채에 대한 상환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은 별개의 공급이 된다. 보험계약상 지급은 고객의 채무를 취소시키지는 않는다.<sup>124)</sup> 대응규칙이 거래 상대방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발생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면, 실제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기

12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9-55; 19-75; 19-85.

12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20.

12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1-5.

12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1-10.

124) Interpretative Decision ID 2003/698.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이 지급기일 후 12개월 내에 갚지 못하거나 공급자가 그 부채를 대손상각하면, 거래 상대방은 그들이 그것을 안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는 증가조정을 해야 한다. 만약 나중에 지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으면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sup>125)</sup> 여기서 부채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미상환인 비금전적 대가도 포함한다.<sup>126)</sup>

다음은 회수불능 부채(bad debt)를 조정할 때 어떻게 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느냐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정은 납세자가 그것을 알게 된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회수불능 부채(bad debt)의 조정은 공급자의 경우 그것이 대손 상각된 공급자의 과세연도에, 수령자의 경우 그 부채가 상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수령자의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대손 상각되지 않은 연체된 부채(overdue debt)에 대한 조정은 공급자의 경우 공급자가 그 부채가 12개월 동안 연체되었음을 알게 된 공급자의 과세연도에, 수령자의 경우 수령자가 알게 된 수령자의 과세연도에 귀속한다.<sup>127)</sup>

부채와 대손상각이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들 서로가 상쇄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조정액수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sup>128)</sup>

12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1-15, 21-20.

126) GST Ruling GSTR 2001/6.

127) GST Ruling GSTR 2000/2; Addendum GSTR 2000/2A.

128) GST Ruling GSTR 2000/2.



## V.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기본세율구조(일반세율/감면세율)
2. 매입세액 공제
3. 특정 식품소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계산제도
4.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 V. 세율과 세액의 계산

### 1 기본세율구조(일반세율/감면세율)

#### 가. 기본계산구조

부가가치세액은 과세대상 공급의 가치의 10%이며<sup>129)</sup>, 감면세율은 없다.<sup>130)</sup> 공급의 가치란 공급대가, 즉 가격의 10/11이므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가격의 1/11로 계산된다. 공급자는 그 액수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공급대가가 금전 이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면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것의 시가를 포함한다(즉 부가가치세 포함 시장가격). 만약 공급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이하로 이루어지거나 증여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는 시가로 지불된 것처럼 계산된다.


#### 나. 반올림 규칙(Rounding off rules)

부가가치세액이 센트 단위의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반올림 규칙이 적용된다.

만약 송장에 단 하나의 과세물품이 있는 경우, 이 공급은 여러 항목으로 나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센트의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하게 된다.

12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70.


130) 우리나라의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은 대체로 “GST-free”(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세율은 없다.

 예 시

회사가 단일한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84의 송장을 발행하였다. 이 경우 반올림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은  $\$0.9854545(1/11 \times \$10.84)$ 인데, 이것을 반올림하여 99센트로 하는 것이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205.

만약 송장에 과세물품이 하나 이상이면, 그 공급은 여러 항목으로 나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전체 송장 접근법(total invoice approach)’과 ‘품목별 접근법(line item approach)’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체 송장 접근법에 따르면 각 공급 또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가격의 1/11이면 전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전체 가격을 11로 나누면 되고, 필요하다면 전체 가격을 반올림하여 센트로 맞추면 된다. 아니면, 품목별 접근법에 따라 반올림되지 않은 각각의 가격을 더하고 센트로 반올림하면 된다.

 예 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하나의 송장에 두 개의 개별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0.84와 \$14.08의 금액을 기입하였다. 반올림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은  $\$0.9854545 + \$1.28 = \$2.2654545$ 이고, 이것은 \$2.27로 반올림된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205.

#### 다. 경매에서의 구매와 판매

과세대상물품이 경매에서 판매될 때,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판매되는지 불포함으로 판매되는지 또는 판매자가 사업자등록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매인과 매도인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의 주의를 받아 법에서 정한 벌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 예시

부동산 매매 중개인은 주거용 토지 3필지(allotments)를 경매로 팔았다. 그 토지는 그 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제외인지 표시를 하지 않고 신문에 광고되었다. 또한 경매 전에 부가가치세가 토지매매에 적용될 것인지 여부도 잠재적 입찰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 경매에서 경매인은 실제로 낙찰가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을 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중재 후에 중개인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약속(undertakings)하였고, 성공한 낙찰자는 지불한 전체 부가가치세 \$48,3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sup>131)</sup>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210.

실제로 경매인이나 중개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단순히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다시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된다.

## 예시

- ① 비어있는 사업장소의 판매에 대한 계약에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도인은 두 당사자는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추가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했다는 것을 근거로 계약을 수정하려고 하였다. 다투어지는 증거는 경매인이 그 경매에서 말한 것과, 그리고 매도인과 구매인은 각각 그 입장을 이해한 것에 따라 파악되었다. 법원은 매도인이 두 당사자에게 공통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것 또는 그 계약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sup>132)</sup>
- ② 또 다른 사건에서의 결론은 위와 다른데, 그 사건에서도 경매에서 말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모든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록 계약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양 당사자는 매매가격 \$1,060,000은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이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가격을 \$1,060,000 + 부가가치세로 수정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매매가 좌우간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매도인은 그 매매가

131) ACCC Media Release 177/05, 13 July 2005 참조.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사적 통칙(private ruling)을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액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133)</sup>

③ 비록 매매계약이 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매도인은 당사자 간에는 명확하게 부가가치세 제외로 이해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는 경매 당시에 말한 것에 대해서 경매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서류증거의 존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계약을 수정할 것을 명령하였다.<sup>134)</sup>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4-210.

만약 매매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최종 경매가격에 포함되고 사업자등록한 구매자는 그 가격의 1/11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매매가 부가가치세 제외라면,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야 한다.

만약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제외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그 매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없고, 매도인은 경매인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없다.

## 2 | 매입세액 공제

### 가. 개관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기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면세 대상이거나 소득세액 공제와 같이 다른 항목에서 공제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을

132) Tam v Mannall & Anor [2010] NSWC 250 참조.

133) Ashton v Monteleone [2010] NSWC 258 참조.

134) SAMM Property Holdings Pty Ltd v Shaye Properties Pty Ltd [2016] NSWSC 362 참조.

허용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가능한 매입<sup>135)</sup>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수입에도 적용된다.

사업자는 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creditable purpose)’으로 무엇인가를 ‘취득(acquire)’하여야 하며, ② 사업자에 대한 어떤 것의 공급은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이어야 하며, ③ 사업자는 그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④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 의무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나. 매입세액 공제 목적을 가진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creditable purpose)으로 무엇인가를 취득한다는 것은 우선 납세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36)</sup> 이것은 사업의 특정한 성격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호주 국세청은 이를 사업의 소득창출활동, 설립 서류, 계약, 사업기록, 사업계획 및 회의록과 같은 것들을 근거로 결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비슷한 소득세 사건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의 어떤 것에 대한 취득 목적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취득하였는지를 고려하고 있다.<sup>137)</sup> 이것은 비록 주관적인 목적이 제한된 관련성을 가지도 있다 하더라도<sup>138)</sup> 객관적으로 결정된다.<sup>139)</sup>

또한 취득이란 사적이거나 가사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생활비, 자녀보

13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1-5, 11-20.

13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1-15.


137) GST Ruling GSTR 2008/1.

138) Macquarie Finance Ltd v FC of T 2005 ATC 4829; GST Ruling GSTR 2008/1.

139) AXA Asia Pacific Holdings Ltd v FC of T 2008 ATC ¶20-074.

육비, 대부분의 가족여행(출근비용)과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관계된다.

그리고 취득이란 구체적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면세가 되는 공급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인 면세 공급은 금융공급(financial supplies)과 거주시설(residential accommodation)이 있다.


 예 시

- ① 은행이 면세가 되는 금융공급(input taxed financial supplies)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취득하였다. 이 취득은 매입세액 공제 목적이 아니다.
- ① 소비자에게 대출(loan finance)도 해주는 소매업자가 대출담당 직원만 사용하는 특별한 대출 소프트웨어(special loans software)를 취득하였다. 이 취득은 매입세액 공제 목적이 아니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5-010.

만약 취득이 부분적으로는 사적 또는 가사용이거나, 부분적으로 면세 공급과 관련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되었는지 사적 목적으로 취득되었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예 시

L회사는 판매 대표팀에게 그들의 연봉계약의 일부로 자동차를 제공한다. 자동차는 회사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관점에서 회사는 자동차를 사업상 필요 때문에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취득되는 것으로 취급된다.<sup>140)</sup>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5-010.

140) GST Ruling GSTR 2006/4.

취득(Acquisition)이란 공급과 같은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재화의 취득, 용역의 취득, 자문 또는 정보를 받는 것, 부동산 및 권리의 수여(grant)나 포기를 수락하는 것, 금융공급을 받는 것,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도록 하거나,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어떤 것을 수인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다. 정부로부터의 구매

호주 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지만 다른 자들과의 거래 목적으로는 명목상의 납세의무(notional liability)를 가지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사업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 이러한 명목상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주정부로부터 구매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141)</sup>


#### 라. 매입세액 공제 시기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현금주의 회계를 근거로 사업을 하는가, 또는 발생주의 회계를 근거로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일정한 경우에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과세기간에서 그 후의 과세기간으로 매입세액 공제 요청 이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이연은 다음과 같은 기간제한이 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귀속가능될 경우, 납세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후 4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공제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sup>142)</sup> 만약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기간에 귀속된다면, 납세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신

14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77-3.

14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3-5; Draft Miscellaneous Taxation Ruling MT 2018/D1.

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후 4년 이내에 제출된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공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잃는다.<sup>143)</sup>

 예 시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취하는 납세자가 2015년 8월에 공제가능한 취득을 하였지만 2015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15년 9월 분기별 신고에서 그것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 납세자는 2019년 10월 28일까지 신고서에 매입세액 공제 요청을 하여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5-010.

위와 같은 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첫째, 그 취득과 관계되는 공급이 면세로 부정확하게 계산되어 과세가 된 경우 또는 과세 제외로 계산된 경우 또는 둘째, 납세자가 4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서류를 세금계산서로 취급해달라고 요구하고 국세청은 4년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 그것에 동의한 경우이다.<sup>144)</sup>

#### 마. 매입세액 공제 계산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액은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 해당액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공급대가가 \$22,000이라면 공제요청이 가능한 매입세액은 \$2,000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적인 취득과 관련되거나 면세공급과 관련된 취득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sup>145)</sup> 이 경우에는 안분하는 방식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143)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구 § 105-55; Trustee for SBM Trust v FC of T 2015 ATC ¶10-389; ATO Decision Impact Statement, 25 August 2015.

14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3-10.

14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1-30.

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취득 의도 대로의 사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안분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뉘지는데, 직접법이 적용 불가능하거나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비용이 취득비용에 대하여 비례적이지 않은 경우에 간접법을 사용한다.


안분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유형은, 취득이 부분적으로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서, 부분적으로는 사적 또는 비사업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사업용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호주 국세청은 의도된 또는 실제의 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법(direct method)'을 먼저 사용한다. 이러한 직접법은 실제 사용거리, 사용시간, 사용량, 사용공간, 직원 수와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이런 요소는 ① 사업자가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미 사용한 기록, ② 실제사용을 포함하여 취득한 이후부터, 그러나 취득한 과세기간에 대한 기업활동보고서(BAS)를 제출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기록, ③ 소득세, 관리비용, 수익성 분석, 기업내부 양도 부과금 또는 원가계산, ④ 유사한 취득의 사용과 관련한 납세자의 이전 경험, ⑤ 사업자의 사업계획, 또는 ⑥ 다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분이 적용되는 두 번째 유형은, 취득이 부분적으로 면세공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면세 부분에 한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는 호주 밖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부분을 통하여 면세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공급으로는 거주지 임대 또는 금융공급이 있다.

사업용에 대한 직접적인 계산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한 계산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간접비용(overhead expenses) 또는 많은 수의 소규모 취득이 있고, 그것을 각각 분리하여 다루기에는 비용 면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 간접법이 적절하다고 국세청은 인정하고 있다.<sup>146)</sup> 간접

146) GST Ruling GSTR 2006/4.


법(indirect methods)에는 투입(input)에 근거한 방식과, 산출(output)에 근거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호주 국세청은 가능하다면 투입에 근거한 방식을 더 선호한다.<sup>147)</sup> 이 방법에 따르면, 일부(some) 투입이 사용된 방식이 다른(other) 투입이 사용된 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용된 투입의 사용이 직접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예 시

A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하는 사업용으로 임대를 하고(과세대상 공급), 1층은 사적 거주용(면세공급)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쓰인 비용의 일부는 과세대상 공급 또는 면세공급에 직접적으로 할당할 수 없는 간접비용이다. 그러나 다양한 다른 비용이 60% 대 40%의 비율로 직접적으로 할당될 수 있으므로 투입에 근거한 방식(input based method)을 사용한다면 A는 같은 비율로 간접비용을 안분할 수 있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5-020.

산출에 근거한 방식(Output-based methods)은 투입의 사업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산출을 사용한다.

 예 시

S는 사업의 부분으로 과세대상 공급과 면세공급을 모두 하고 있다. 일부 비용은 과세대상 또는 면세 공급에 직접적으로 할당되지 않는 간접비용이다. 그러나 과세대상 공급으로부터의 산출비율이 전체 산출의 60%이다. 산출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여 S는 같은 근거로 간접비용을 안분할 수 있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5-020.

이 외에도 국세청은 특정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액을 안분하는 다른 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147)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5-020.

## 바. 회사설립 전(또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 설립이 사업의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 설립 전 사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립되고 난 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 규칙이 있다.<sup>148)</sup> 이러한 '설립 전(pre-establishment)'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자는 회사가 존재하기 전에 취득을 했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는 나중의 회사의 설립 목적 또는 회사의 사업 수행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그 회사는 그 후 설립되어야 하고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넷째, 구매자가 회사의 구성원, 임원, 직원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구입 시 구매자가 지불한 액수에 대하여 전부 상환을 해준다.

위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면, 매입세액은 구매자가 아니라 회사가 요청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는 구매자가 그 취득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전부 상환을 받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sup>149)</sup> 그 회사가 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구매자가 구매 시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본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될 때까지 이연된다.

'설립 전(Pre-establishment)' 규칙은 만약 구매자 그 자신이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즉 구매자가 구매자 자신의 사업용으로 구입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회사가 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소유를 인수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세액

14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60-5.

14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60-25.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sup>150)</sup>

구매가 사적 용도 또는 가사용도이거나 금융용역 또는 다른 면세공급을 제공하는 회사와 관계되어 있다면 ‘설립 전(Pre-establishment)’규칙이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설립 전(Pre-establishment)’규칙은 회사에만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없지만 그들이 등록할 때 보유한 상품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의 해외 지사를 통한 용역의 공급은 면세공급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설립 전(Pre-establishment)’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 3 특정 식품소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계산제도

#### 가. 개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면세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면세 재화에 대하여 일정 부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식품을 면세재화로 취급하는 경우 누적효과 등 면세에 대한 효과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인간의 소비를 위한 대부분의 음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없다. 예를 들어 과일, 야채, 육류, 생선, 빵, 치즈, 달걀, 우유, 수프, 설탕, 차, 커피와 같은 것들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과세물품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식품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계산방식(Simplified Accounting Method)이 적용된다.

15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60-15.

## 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음식

식품 또는 음식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만약 음식이 다음 아래의 종류에 속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식당(restaurant), 출장식 뷔페음식(catered or eat-in food)
- ② 뜨거운 포장음식(hot takeaways)
- ③ 미리 준비된 식사(prepared meals)와 다른 조리 식품(other prepared food)
- ④ 빵제품(bakery products, 빵 자체는 과세제외)
- ⑤ 과자류(confectionery), 간식(snacks), 아이스크림(ice-cream), 비스킷(biscuits)
- ⑥ 주류(beer), 대부분의 청량음료(most soft drinks), 일정한 다른 음료(certain other drinks)
- ⑦ 일정한 식품 첨가물(certain food additives)<sup>151)</sup>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결정할 때에는 ① 그것이 식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② 만약 해당한다면 위에 과세가 되는 위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어떤 것이 식품이면서 위의 과세가 가능 유형 중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어느 하나에 속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유형 중 여러 개가 중복하여 적용되면 각각을 다시 체크해보아야 한다.

음식 공급자에게는 단순화된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적용된다. 납세자가 판매하는 음식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일부는 영세율이 다른 일부는 과세되는 음식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 둘의 혼합물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간편한 방법이 이용가능하다.

우선 첫째로, 제조자나 다른 공급자는 'GS1net'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15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3.

음식이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분류이다. GS1net은 제품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고유번호와 바코드에 대한 온라인 카탈로그이며, 또한 그들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를 나타낸다. 그 카탈로그는 매우 긴데,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A		
Item	GST Status	Notes
abalone, of a size and quality to be sold as food for human consumption (live, fresh, frozen, tinned, dried, but not hot)	GST-free	Mollusc. Food for human consumption that is not of a kind specified in Schedule 1 of the GST Act. The exclusion at paragraph 38-4(1)(g) of the GST Act does not apply.
acidity regulator - food additive which, at time of importation would, if it had been a supply, have a measurable nutritional value (carbohydrate, fat, protein, vitamin or dietary mineral); and be supplied for use solely or predominantly in the composition of food, and be essential to the composition of that food.	GST-free	Exempt food additive (import). Section 13-10 and paragraph 38-3(1)(e) of the GST Act and paragraph 38-3.02(2)(b) of the GST Regulations. Examples include dietary mineral compounds such as: calcium acetate (E263), phosphoric acid (E338) and sodium sulphate (E514).
acidity regulator - food additive which, at time of supply, has a measurable nutritional value (carbohydrate, fat, protein, vitamin or dietary mineral); and is supplied for use solely or predominantly in the composition of food, and is essential to the composition of that food.	GST-free	Exempt food additive (food manufacture). Paragraph 38-3(1)(e) of the GST Act and paragraph 38-3.02(2)(b) of the GST Regulations apply. Examples include dietary mineral compounds such as: calcium acetate (E263), phosphoric acid (E338) and sodium sulphate (E514).
acidity regulator marketed as an ingredient for confectionery	taxable	Schedule 1, item 8 of the GST Act applies.
acidity regulator not considered essential to the composition of food for human consumption	taxable	Not an exempt food additive. Paragraph 38-3(1)(e) of the GST Act and subregulation 38-3.02(2) of the GST Regulations do not apply. For example: acidity regulators intended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et food, alcoholic beverages, nutritional supplements, pharmaceuticals or other non-food application
acidity regulator not intended for use in the composition of food for human consumption.	taxable	Not an exempt food additive. Paragraph 38-3(1)(e) of the GST Act and subregulation 38-3.02(2) of the GST Regulations do not apply. For example: acidity regulators intended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et food, alcoholic beverages, nutritional supplements, pharmaceuticals or other non-food application
acidity regulator with no measurable nutritional value.	taxable	Not an exempt food additive. Paragraph 38-3(1)(e) of the GST Act and subregulation 38-3.02(2) of the GST Regulations do not apply.
alcohol making supplies	taxable	Not ingredients for a beverage of a kind specified in Schedule 2 of the GST Act
alcoholic beverages	taxable	Not a beverage of a kind specified in Schedule 2 of the GST Act
alcoholic pre-mixed drink (e.g. rum & cola, brandy & dry)	taxable	Not a beverage of a kind specified in Schedule 2 of the GST Act
alcoholic spirits	taxable	Not a beverage of a kind specified in Schedule 2 of the GST Act
alfalfa sprouts	GST-free	Food for human consumption that is not of a kind specified in Schedule 1 of the GST Act.
almond essence	GST-free	Flavouring. Paragraph 38-4(1)(e) of the GST Act applies.
aloe vera juice (supplied for medicinal or therapeutic purposes)	taxable	Not a beverage for human consumption. Paragraph 38-4(1)(c) of the GST Act does not apply. A product marketed with a recommended dosage and/or information on its medicinal benefits is considered to have the character of a medicinal preparation.
amaretti (Italian almond cookie)	taxable	Schedule 1, item 32 of the GST Act applies.
anchovies	GST-free	Food for human consumption that is not of a kind specified in Schedule 1 of the GST Act.

출처: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Goods and Services Tax Industry Issues: Detailed Food List(부가가치세 산업관련 자료: 상세 식품 목록),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GII/GSTIIFL1/NAT/ATO/00001>에서 이용 가능.

국세청은 납세자가 GS1net의 부가가치세 분류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벌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불리한 소급적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152)</sup>

특정 식품소매업자는 간이계산방식(Simplified Accounting Method)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간이계산방식(Simplified Accounting Method)

##### 1) 개요

식품의 공급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식품, 과세가 되는 식품, 또는 앞의 두 개가 혼합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간이 방법이 이용될 수 있는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제조자와 다른 공급자들은 식품과 식료품 제품에 대한 GS1net상의 부가가치세 분류를 이용하여 해당 식품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식품 소매업자 (retailers)는 국세청이 승인한 간이계산방식(Simplified Accounting Methods: SAMs)을 사용할 수도 있다.<sup>153)</sup> 일반적으로 간이계산방식에는 ① 사업표준 방식(business norms method), ② 재고구매방식(stock purchases method)<sup>154)</sup>, ③ 속사방식(snapshot method) 세 가지가 있으며, 일정한 유형의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개별 선택적 방식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

간이계산방식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자는 동일한 사업장(premises)에서 과세되는 식품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이어야 하고, 그 사업자의 간이세액계산 매출액이 \$2,000,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각 개별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또, 전체 판매액과 전체 영

152) 더 자세한 것은 the ATO Fact Sheet Simpler GST Accounting for the Food and Grocery Industry(NAT 7162); Practice Statement PS LA 2012/2(GA)참조.

15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23-5.

154) Simplified GST Accounting Methods Determination 2017 for Retailers who sell Food, 2017년 9월 28일부터 효력 발생.

세율적용 판매액을 구별하고 기록하는 적절한 POS(point-of-sale) 장비가 없어야 한다. 간이세액계산 매출액(SAM turnover)이란 전년 회계연도 동안 전체 부가가치세 제외 판매액수 또는 현 회계연도 동안 예상 전체 부가가치세 제외 판매액수 둘 중 하나를 의미한다. 그리고 적절한 장비에는 전자스캐닝시스템, 터치스크린등록기, 제품 식별이 가능한(product-specific) 금전등록기를 포함한다.

현금주의 회계를 취하는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를 취하는 소매업자들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방법을 선택하면 12개월 동안은 변경할 수 없다. 간이계산방식은 거래 재고(trading stock)의 구입과 판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고 이외에 자본자산 등의 다른 자산이나 임대, 전화 또는 자본설비의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계산방식은 가격 책정과는 관계가 없다.

## 2) 간이계산방식의 종류

### ① 사업표준방식(business norms method)

사업표준방식은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구입 및 판매와 과세대상 구입 및 판매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거래판매의 표준비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영세율 적용 구입 및 판매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호주 국세청이 정한 사업표준은 아래와 같다.

표 V-1 국세청이 정한 사업표준

종류	영세율 적용 판매 (GST-free sales)	영세율 적용 구매 (GST-free purchases)
유럽수입식품가게(Continental delicatessens) 단, 대부분의 판매가 주로 식료품이거나 카페 식당 공급이 있는 경우는 제외	85%	90%
케이크 가게(카페 아님)	2%	95%
과세대상 생산에 영세율 적용 재료를 투입하는 전환자 (converter)가 아닌 건강식품 가게	35%	35%

〈표 V-1〉의 계속

종류		영세율 적용 판매 (GST-free sales)	영세율 적용 구매 (GST-free purchases)
선어(fresh fish)와 다른 해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어물전		35%	98%
조제실 판매와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개인처방 및 식품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이 있는 약국(판매에서 환자 부담금 공제)	조제실: 매입세액 공제 요청불가	98%	0%
	일반의약품	47.5%	2%
주류를 팔지 않는 시골의 편의점(총판매와 총구매에서 연료 또는 호주 우정국 거래 판매를 공제)	과세대상 생산에 영세율 적용 재료를 투입하는 전환자(converter)	22.5%	30%
	영세율 대상 재고를 구매하여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재판매업자(reseller)	30%	30%
빵가게		50%	75%
수입이 대부분 포장음식 또는 매장 준비 음식에서 발생하지 않는 편의점	연료나 주류를 팔지 않는 전환자(converter)	22.5%	30%
	연료나 주류를 팔지 않는 재판매업자(reseller)	30%	30%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3-215.

#### 예시

T 빵가게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한 분기에 총판매는 \$200,000이고 총재고의 구매는 \$160,000이다.  
 판매에 대한 사업표준은 50%이므로, 영세율 적용 판매는 \$200,000의 50%인 \$100,000로 추정되고, 구매에 대한 사업표준은 75%이므로, 영세율 적용 구매는 \$160,000의 75%인 \$120,000로 추정된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3-215.

② 재고구매방식(stock purchases method)

재고구매방식은 영세율 적용 재고를 재판매만 하는 소매업자만 사용할 수 있고, 영세율 적용 제품을 과세대상 제품으로 전환하는 소매업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방식은 만약 사업자가 재판매만 하면 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판매비율은 사업자의 영세율 구매비율과 같게 될 것이라는 데 기본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간이계산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 과세기간 동안 영세율 적용 재고구매의 비율을 계산하지만 그 비율을 그 과세기간의 영세율 적용판매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을 분리하여 해야 한다.

**예시**

한 과세기간 동안 재판매업자의 총판매는 \$20,000이고 총재고구매는 영세율 적용 구매 \$120,000를 포함하여 \$160,000이다. 그러므로 영세율 적용 구매비율은  $120,000/160,000=75\%$ 이다. 재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 판매를 추정하기 위하여 총판매에 이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200,000의 75%는 \$150,000이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3-215.

두 번째 방법은, 행정적인 업무를 좀 더 줄이는 방식으로, “두 표본 기간(two sample periods)”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4주의 표본 기간 동안 영세율 적용 구매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을 전체 영세율 판매와 구매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계절적 등락(fluctuations)을 감안하여 추정은 일 년에 두 번 행해져야 한다. 제1 표본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의 기간 동안 추출되어 7월부터 12월 과세기간에 사용된다. 제2 표본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 기간 동안 추출되어 1월에서 6월 과세기간에 사용된다. 각 표본은 연속되는 4주의 기간 동안 조사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매일 업데이트 되는 ① 4주에 걸친 재고구매 총액 ② 4주에 걸친 영세율 적용 재고구매 총액에 대한 기록표(worksheet)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비율은 관계되는 과세기간 동안 총영세율 적용 판매

와 재고구매 비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세 번째 방법은, 사업자가 구매하고 영세율 적용하여 재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5%의 영세율 추정 수치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한 구매가 전체 재고 구매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에 사용된다.

### ③ 속사방식(snapshot method)

속사방식은 위의 재고구매방식과 유사하지만 재판매업자와 전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 4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 가. 개요

부가가치세 납세액은 각 과세기간 말에 계산된다. 즉, 월별, 분기별, 또 일정한 경우에는 연별 계산인데 부가가치세 총매출이 \$2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별 과세기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납부세액의 계산은 과세기간 동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동 기간 동안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조정(GST adjustments)을 고려한다. 조정을 거치고 난 후 순액(net amounts)에서 만약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청은 환급액으로 미납세액을 충당할 수도 있다.

각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귀속시키는 방법은 납세자가 현금주의를 취하는가 아니면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발생주의를 취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할부구매(lay-bys) 또는 주기적(계속적) 공급(periodic supplies)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부적절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인 규정을 배제(override)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나. 부가가치세 조정(GST Adjustments)

### 1) 개요

거래 또는 사업운영상 사후적 변화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액 또는 공제 매입세액이 정확하지 않을 때 사후적 조정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사후조정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가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에서의 변화이다. 이것을 조정사유(adjustment events)라고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채권의 회수불능 또는 채무의 연체이다. 세 번째 원인은, 사용목적에서의 변화이고, 네 번째 원인은, 사업의 시작·이전·폐지와 관련된 변화 또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의 변화이다. 그 외 사후조정이 발생하는 잡다한 원인들이 있다.

조정이 순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거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이를 증가조정(increasing adjustment: IA)이라고 하고,<sup>155)</sup> 조정이 순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거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감소조정(decreasing adjustment: DA)이라고 한다.<sup>156)</sup>

조정은 그것을 인식한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귀속된다.<sup>157)</sup> 즉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결과를 예측했던 하지 않았던,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관련 사실을 깨달았을 때를 의미한다.<sup>158)</sup>

### 2) 조정사유(adjustment events)

조정사유는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문의 취소인데, 단순히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하여 반납된 것은 조정사유가 아니다. 둘째, 대가가 변경된 것도 조정사유이다. 또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조정사유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수출을 위하

15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9-50, 19-75, 19-80.

15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9-55, 19-75, 19-85.

15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20.

158) Interpretative Decision ID 2007/72.

여 공급된 재화가 60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아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sup>159)</sup>

이러한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한 부가가치세 지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게 대응 조정(compensating adjust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60)</sup> 만약 공급자가 취소된 공급에 대하여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부 환불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환불한다면, 공급자가 그로 인하여 우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취소된 공급의 결과로서의 조정은 그에 맞게 감소한다.<sup>161)</sup>

조정은 납세자가 그것을 인식한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현금주의를 취하고 있고 조정 사유가 대가 지불과 관계된 것이면 조정은 그 대가가 지급된 과세연도에 귀속된다.<sup>162)</sup> 감소조정인 경우에 납세자는 조정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3) 회수불가능한 부채에 대한 조정

만약 납세자가 발생주의에 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대금을 받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않았거나 전부 받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 그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결과가 된다. 그러한 경우에 그 부채(debt)는 회수불가능 부채(bad debt)가 되어 상각되는 과세연도에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감소조정을 할 수 있다. 감소액은 상각액의 1/11이다.<sup>163)</sup>

이러한 조정은 납세자가 실제로 그것을 상각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채가 12개월 또는 그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에 감소액은 미지불액의 1/11이다.

15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9-10.

16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9-40, 19-70.

161) GST Ruling GSTR 2009/3.

16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20.

16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1-5

이러한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나중에 회수가 되면 그 나중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적절한 증가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증가액은 회수된 금액의 1/11이다.<sup>164)</sup>

그리고 거래의 상대방에 대해서 대응조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면 납세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불하기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기한 후 12개월 내에 지불하지 못하거나 공급자가 회수불가능으로 부채를 상각한다면 납세자는 그것을 인식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그들의 부가가치세액을 증가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소해야 한다.<sup>165)</sup>

국세청에 의하면 부채(debt)는 금전적 부채에 한정되지 않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비금전적 대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sup>166)</sup>

회수불가능한 부채의 조정은 공급자의 경우 상각되는 공급자의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부채가 상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상각되지 않은 연체 부채에 대한 조정은 공급자의 경우에는 그 부채가 12개월 동안 연체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과세연도에 귀속되고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것을 인식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sup>167)</sup>

16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1-10

16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1-15, 21-20.

166) GST Ruling GSTR 2001/6.

167) GST Ruling GSTR 2000/2; Addendum GSTR 2000/2A.

## VI. 영세율과 면세제도

1. 과세 제외 공급(Non-taxable supplies)
2. 영세율(GST-free supplies)
3. 면세(Input taxed supplies)





## VI. 영세율과 면세제도<sup>168)</sup>

### 1 과세 제외 공급(Non-taxable supplies)

부가가치세 규정은 증여(gifts), 미등록 사업체에 의한 공급,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 강제되지 않은 사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급, 호주와 관련성이 없는 거래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sup>169)</sup> 정부단체 간에 이루어진 전용(appropriations) 또한 부가가치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sup>170)</sup> 고용인으로서 공급된 용역도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

### 2 영세율(GST-free supplies)

호주 부가가치세법에서 'GST-free'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없지만 공급자는 그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거래는 위의 과세 제외 공급과는 다르다. 호주의 'GST-free'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영세율과 매우 유사하므로 영세율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설명한다.

168) 호주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나라의 영세율에 해당하는 것은 GST-free supplies로 칭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면세와 같은 개념은 Input taxed supplies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범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6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77-1.

17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17(3).

**예시**

사업자등록을 한 야채 가게의 사업은 신선식품을 파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야채 가게 주인이 판매하는 식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6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34-165.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야는 수출, 건강 및 의료, 교육 및 보육, 식품, 자선·종교·증여 공제가 되는 단체(gift-deductible bodies), 국제운송 및 여행 등이며, 구체적인 적용대상 공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I-1〉 영세율 적용 공급

분류	적용 공급 예시	관련 법조항
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출 ※ 호주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화의 리스에도 적용	Subdiv. 38-E
건강 및 의료	개업 의사나 병리학자가 제공하는 용역	§38-7
	물리치료사, 자연요법사, 간호사, 검안사 등 의료보조인들이 제공하는 용역	§38-10
	병원 치료	§38-20
	재택간호, 지역사회가료(community care), 전문가 장애인 용역	§§38-25~40
	의료용 보조기구	§38-45, Sch 3
	의약품, 건강 제품	§§38-47, 50
	건강보험	§38-55
교육 및 보육	교육과정	§38-85
	특정 교재, 임대 상품, 견학여행	§§38-90~97
	특정 학생 숙박시설	§38-105
	전문 직업 과정	§38-85
	승인된 보육서비스	§38-140

〈표 VI-1〉의 계속

분류	적용 공급 예시	관련 법조항
인간의 소비를 위한 대부분의 식품 ※ 그러나 인간 소비용이 아닌 식품, 식당·출장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eat-in food, 조리된 포장 음식, 조리된 식사와 기타 조리된 음식, 방제품(빵은 제외), 과자류·스낵·아이스크림·비스킷과 주류, 대부분의 청량음료, 기타 다른 음료수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Subdiv. 38-A
자선·종교·증여 공제 대상 단체(gift-deductible bodies)의 일부 활동 ※ 예를 들어 중고품 판매, 래플(raffles) <sup>171)</sup> , 빙고게임 등이 있음		Subdiv. 38-G
국제운송 및 여행 ※ 일반적으로 국내 여행은 과세대상임		Subdiv. 38-K
기타	영업권(Going concern) 매매	Subdiv. 38-J
	주 소유지(Crown land)의 불하	Subdiv. 38-N
	특정 농지 거래	Subdiv. 38-O
	특정 귀금속 거래	Subdiv. 38-L
	상·하수도, 배수시설	Subdiv. 38-I
	장애인용 차량	Subdiv. 38-P
	호주 방문자에게 제공되는 전 세계 로밍서비스	Subdiv. 38-R
	적격 배출권(eligible emissions units)	Subdiv. 38-S

출처: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6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9134-165의 내용과 호주부가가치세 법조문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

### 3 면세(Input taxed supplies)

공급이 면세에 해당하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공급자는 그 공급과 관련하여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즉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면세공급은 Div40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는 아래의 표와 같다.

171) 특정 기관에서 기금모금을 위한 복권.

표 VI-2 면세 적용 공급

분류	관련 법조항(Div. 40)
대출, 화폐의 거래, 증권의 발행 등 금융용역	§40-5
민간 주택의 임대	§40-35
주택의 판매 ※ 그러나 신축주택 및 상가는 아님	§40-65~75
학교 구내식당에서의 음식물 공급(선택가능)	§40-130
자선단체의 모금 활동	§40-160~165
특정 귀금속의 거래	§40-100

출처: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6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934-170의 내용과 호주 부가가치세 법조문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

하나의 공급이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먼저 적용된다.<sup>172)</sup>

17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30.

## VII.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장소
2. 공급시기





## Ⅶ.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 1 | 공급장소

호주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적 부가가치세(territorial VAT)이지만, 독특한 공급장소 규정을 두고 있다.<sup>173)</sup> 즉 재화의 공급이 언제 호주와 관련성을 가지지에 대한 규정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공급은 ‘간접세 구역(indirect tax zone)’ 또는 호주와 연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화의 공급은 만약 그 재화가 호주에서 공급의 수령인에게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sup>174)</sup> 그 재화가 호주에서 내보내질 때(removed),<sup>175)</sup> 재화가 호주로 수입·설치·조립되고 있는 중이라면 호주와 연관되게 된다. 즉 공급장소가 호주라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호주에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재화의 공급은 호주와 연관이 있다. 이것은 두 비거주자 간에 공급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리스(lease)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는 공급에 대해서는 위의 호주와의 관련성 규칙에 두 가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sup>176)</sup> 이 예외가 적용되면 해당 공급은 호주와 관련성이 없다. 첫 번째 예외는, 재화의 공급이 어떤 비거주자 임대인(lessor)에게서 새로운 비거주자 임대인(lessor)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리스(lease)일 경우이다. 두 번째 예외는, 재화를 취득한 비거주자와 그 재화를 계속 리스를 하는 사업자 간에 맺어진 새로운 리스 약정에 대한 것이다.

173) Alan Schenk & Oliver Oldman, *Value Added Tax-A Comparative Approach*, 1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196.

17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25(1).

17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25(2).

17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26.

부동산의 공급은 만약 부동산이나 관련 토지가 호주에 있다면 호주와 연관되게 된다.

그 외 다른 공급은 만약 용역과 같은 것이 호주에서 행해지거나, 공급자가 호주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한다면 호주와 연관되게 된다. 상업(business)이나 다른 활동이 사업(enterprise)이 되기 위하여 호주에서 행해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사업에 의한 일정한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 호주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재화 또는 부동산 이외의 공급은 사업이 호주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sup>177)</sup> 이런 견지에서 사업이 소득세법상에서 정의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고정된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법상 정의가 일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수행된다면 호주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 된다.<sup>178)</sup> 그러므로 호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한 용역의 제공 또는 호주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안에 속한다.<sup>179)</sup>

## 2 | 공급시기

### 가. 재화

재화는 재화가 이전될 때(removed) 공급되거나 취득된 것으로 한다. 만약 재화가 물리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재화가 수령자에게 사용 가능해질 때이다. 이전(Removal)이라는 것은 명백히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므로 재화는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이동될 수 있다.

17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25(5).

17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25(6).

179) Alan Schenk & Oliver Oldman, Value Added Tax-A Comparative Approach, 1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196.

만약 납세자가 미래의 어느 시기에 특정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선물계약(forward contract)을 체결하였다면, 공급은 재화가 후에 이전될 시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에 재화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전에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 시기는 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해진 때이다. 예를 들어 재화가 시용판매조건으로 팔리는 경우이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재화가 세관을 통과하고 최종 소비를 위하여 반입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 나. 부동산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이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 가능할 때 공급되고 취득된 것이다. 이것은 공급받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부동산의 이익을 사용할 현실적·실제적 능력을 취득할 때 일어난다.<sup>180)</sup> 이것은 전형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판매를 위한 더 빠른 계약이 있다하더라도 대금지급(settlement)시에 일어난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제한적인 권리만을 가졌다면 공급받는 자가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 사용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대금지급이 되고 나서이다.

#### 다. 용역

용역은 그것이 수행된 때에 공급되고 취득된 것이다. “용역”이란 전문적 자문의 제공(providing professional advice), 케이터링(catering), 운송(transport), 관광서비스(tourism services), 접대와 유흥(hospitality and entertainment), 청소(cleaning), 수리(maintenance), 또는 건축공사(building work)와 같은 다

<sup>180)</sup> Central Equity Ltd v FC of T [2011] FCA 908.

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진행률 기준(progressive) 용역 또는 주기적(계속적) 용역에 대하여는 특별규칙이 적용된다.<sup>181)</sup> 만약 특별규칙이 없다면 이러한 용역은 최초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송장이 더 일찍 발송된 경우에는 그 발송된 과세기간에 ‘모든’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가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규칙은 각 요소에 대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개별 공급에 대한 과세기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규칙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단일 공급 또는 취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특히 리스(leases)에 적용된다.<sup>182)</sup> 또 월별로 결제하는 연간 구독 계약, 건설 및 건축계약, 부동산 관리계약, 매달 납부하는 보험계약, 매달 결제하는 사무실시설 관리계약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계약은 개별적으로 결제되는 공급에 대한 일련의 계약으로 취급된다.<sup>183)</sup>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각 공급의 진행적·주기적(계속적) 요소는 개별 공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그러한 요소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때나 송장이 더 일찍 발송된 경우에는 그 발송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각 진행적·주기적(계속적) 대금지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대가 지불일과 송장발송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진행적·주기적(계속적) 요소가 쉽게 확정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개별 대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sup>184)</sup> 예를 들어 12개월 리스계약에서 리스료가 매달 지급될 경우에는 그 요소들이 월별로 쉽게 확정된다. 그러므로 리스임차인(lessee)의 리스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매달 지급할 때나 송장발송일 중에서 빠른 날에 귀속된다. 반면 농업사업자에 대한 12개월 리스계약에서 대금지급일을 곡물이 수확된 때로 한다면 요소에 대한 확정이 쉽지 않다. 만약 대금지급이 4월에 \$10,000, 5월에 \$5,000, 6월에 \$5,000로 이루어진다면 그 리스는 각 \$10,000, \$5,000, \$5,000, 세 개로 구분된 것으로 취급되고 해당 월

18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 156.

18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56-22.

18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56-5, 10, 17, 20.

18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56-5, 10.

에 이루어진 것이 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그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sup>185)</sup> 이러한 특별규칙이 임대료 지급에는 적용되지만, 리스 할증료(premium) 또는 리스 장려금(lease incentive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186)</sup> 보증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몰수되지 않는 한 대가의 부분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진행적·주기적(계속적) 공급에 대한 과세기간 귀속에 대한 특별규칙에 대해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반드시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취하고 있으면 이 규칙은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

---

185)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7-420.

186) GST Ruling GSTR 2000/35.



## VIII. 부가가치세 행정

1. 과세기간·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지
2. 세금계산서
3. 신고와 납부
4.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5. 사업자등록
6. 확인조사
7. 행정상 제재(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등)
8. 행정형벌(벌금, 징역)





## VII. 부가가치세 행정

### 1 과세기간·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지

#### 가.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연별 과세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분기별, 즉 석 달의 기간으로 하는데, 과세기간 종료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총매출이 2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석 달 미만의 기간 동안 호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납세의무를 잘 지키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월별 과세기간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변하면(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매출이 2천만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최소 12개월 동안은 월별 과세기간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분기별 과세기간으로 전환할 것을 택할 수 있다. 선택적 월별 과세기간의 지위와는 달리 호주 국세청은 이 12개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사업체가 비거주자의 거주자 대리인일 경우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이 2천만달러 이상이라면 월별 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월별 과세기간이 강제되지는 않더라도, 사업체는 월별 과세기간을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선택적 월별 과세기간이라 함). 이러한 선택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사업체가 최소 12개월 기간 동안 선택적 월별 과세기간을 사용하고 그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출이 2천만달러 미만이라면 분기별 과세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국세청에 관련 통지만 하면 된다. 만약 사업체가 승인된 형식으로 요청을 한다면 국세청은 이 12개월의 기간을 줄일 재량을 가진다.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세

청은 월별 과세기간 사용기간 및 초기 사업자등록하에서 월별 과세기간이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는 연간 단위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선택권을 가진다. 이런 규정은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75,000달러 미만인 일반사업체와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150,000달러 미만인 비영리조직에 적용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사업체들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강제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권리 또는 옵션의 역외공급이 매출액을 계산하는 데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과세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분납하기로 선택한 사업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표 VIII-1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		
	75,000달러 이하 (비영리단체 150,000달러 이하)	75,000달러 이상 ~ 20,000,000달러 미만	20,000,000달러 이상
월별	가능	가능	가능
분기별	가능	가능	불가능
연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출처: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208.

## 나. 납세의무 성립 시기

### 1) 개요

매입과 매출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발생주의(accruals 또는 invoice basis)와 현금주의(cash basis)로 나뉜다. 현금주의를 사용할 요건을 갖춘 경우 이외에는 발생주의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주의할 것은 과세가능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귀속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송장으로, 송장(invoice)이란 '지급의무'를 알리는 서류인데, 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으면 된다. 지급의무에서 '의무(obligation)'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지만,<sup>187)</sup> 어떤 서류가 지불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다 해도 송장이 될 수 있다.<sup>188)</sup> 송장은 작업견적, 보험, 회원 갱신고지가 아닌 배달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주 국세청에 따르면 조건부 의무고지는 매매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송장이 아니라고 본다.<sup>189)</sup>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sup>190)</sup> 송장은 전자적 전송, 우편 발송, 등기발송, 또는 인편으로 전달된 때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송장을 수령한 자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으면 송장에 표시된 발행날짜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송장은 첫째, 그것이 손쉽게 접근가능한 곳에 게시되어 있고, 둘째, 읽을 수 있는 서식으로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가능하며, 셋째, 수령자가 그 송장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라는 것을 메일 등을 통하여 고지받거나, 그 송장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라는 것을 이전 계약에 의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송장은 대개 공급자에 의해서 발행되지만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송장이 될 수 있다.<sup>191)</sup> 세금계산서(Tax invoice)는 공급자, 공급,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정한 상세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특별한 종류의 서류로, 대개는 송장과 같은 서류이지만 반드시 통상의 송장과 같은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187) GST Ruling GSTR 2000/34.

188) Shell NZ Holding Company Ltd v CIR (1994) 16 NZTC 11,163, p 11,168.

189) GST Ruling GSTR 2000/28.

190) Tavco Group Pty Ltd v FC of T 2008 ATC ¶10-049.

191) GST Determination GSTD 2005/1.

2) 발생주의(Accruals basis)

발생주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공급에 따른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①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② 공급에 대한 송장이 발행된 과세연도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sup>192)</sup>

매입한 것에 대한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는 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② 취득에 대한 송장이 발행된 과세연도 중 빠른 것에 귀속된다.<sup>193)</sup>

그러나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없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처음 수취한 기간 후의 과세연도로 이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입세액 공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4년의 기간 제한(four-year limit)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시**

① 공급자와 구매자가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둘 다 과세기간이 같다. 공급자는 그 해의 첫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송장을 발급하였는데, 그 송장은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구매자는 그 해의 두 번째 과세기간에 재화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 경우 공급자는 송장을 발급한 때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므로 첫 번째 과세기간에 그 판매에 대한 모든 부가가치세가 귀속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 송장을 받은 때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지만 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귀속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가 없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까지는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공급자와 구매자가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둘 다 과세기간이 같다. 구매자는 첫 번째 과세기간에 재화에 대한 보증금을 제공하고 두 번째 연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물건을 받았으며, 세 번째 연도에 남은 잔금을 지불하였다. 이 경우 공급

19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5.

19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10.

자가 첫 번째 과세연도에 보증금의 형태로 대가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판매에 대한 모든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구매자는 두 번째 과세연도가 되어야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입에 대한 모든 매입세액 공제는 두 번째 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

- ③ 공급자와 구매자가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둘 다 과세기간이 같다. 공급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물건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두 번째 과세연도에 공급하였다. 이 경우 공급자는 그 판매에 대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첫 번째 연도에 귀속해야 한다. 구매자는 두 번째 과세연도가 되어야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구매에 대한 모든 매입세액은 그 시기에 귀속되어야 한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7-205.

### 3)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주의하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대가가 수령된 과세연도에 귀속되고, 매입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대가를 제공한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현금주의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채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납세자가 관련 매출액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테스트는 (a) 납세자가 선택을 한 과세연도 동안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이는 납세자의 소득, 즉 계열사업체와 연관사업체의 소득 합이 1천만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b) 납세자가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총매출이 2천만달러 이하 일 때(사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 요건은 이 유형이 일정한 자선단체, 연금기금의 수탁자, 정부기관 같은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이다.
- ② 납세자가 인증된 자선단체, 증여공제대상단체(gift-deductible entity) 또는 공립학교(government school)인 경우
- ③ 납세자가 소득을 수취주의(receipt basis)<sup>194</sup>로 소득을 처리하는 경우

194) 이 방식은 개인 전문직에 의해 흔히 사용됨. Taxation Ruling TR 98/1 참조.

- ④ 납세자가 영위하는 각 사업체가 국세청에 의해서 현금주의를 채택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sup>195)</sup> 이러한 승인에 따라, 파산 시 청산인(liquidators), 파산 관재인(receivers), 임시 경영인(interim managers), 신탁관리자(trustee)는 그들이 대표자로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현금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sup>196)</sup>

현금주의를 채택할 요건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청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어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업의 성격과 규모 및 납세자의 회계의 성격을 고려하게 된다.<sup>197)</sup>

각각의 경우에 현금주의를 채택하는 선택은 납세자가 채택한 과세기간 첫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 2 | 세금계산서

### 가. 개요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특별한 유형의 송장이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귀속되는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수취하지 않으면 공제가능한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만약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 요청은 그 요건이 충족되는 과세기간까지 이연된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계산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 공제가능 매입이 실제 발생했다고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공급가치가 75달러 이하(부가가치세 제외)라면

19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40.

196) Goods and Services Tax Choosing to Account on a Cash Basis Determination (No 39) 2015.

19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45.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의무는 없다.

#### 나.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발행(recipient created)’ 세금계산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다른 사업체와 공급자와 협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체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만약 매입자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그 공급자는 그 요청 후 28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sup>198)</sup> 만약 공급자가 매입자의 요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한다면, 매입자는 그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면서 그에 대하여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매입자는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sup>199)</sup> 매입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세금계산서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sup>200)</sup>

#### 다. 세금계산서 요건 및 기재사항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자에 의해서 발급되어야 한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예외 있음).

둘째,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승인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세금계산서는 ① 공급자의 신원과 ABN, ② 만약 총공급대가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수령자의 신원 또는 ABN, ③ 공급목적물(수량과 가격 포함), ④ 문서와 관련 있는 각 공급의 과세대상 여부 및 정도,<sup>201)</sup> ⑤ 발급일, ⑥ 그

19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70.

19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10.

20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70.

201) 이 요건은 만약 그 문서가 각 과세대상 공급에 대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고 있거

문서와 관계있는 각 공급 관련 지불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⑦ 규칙에서 명시된 다른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 세금계산서는 그것이 세금계산서로 쓰이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문서 그 자체로부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분명한 방법은 '세금계산서(Tax Invoice)'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고, 적절한 환경에서는 부가가치세 송장(GST Invoice)과 같은 대체어구로도 충족될 수 있다.<sup>202)</sup>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공급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하나 이상의 공급을 표시할 수 있다. 만약 일부는 요건에 맞으나, 다른 일부는 요건에 맞지 않다면 요건에 맞는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가격의 경우에는 가격이 송장에서 정해질 수 있다면, 각 항목의 실제 가격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sup>203)</sup>

---

나, 공급의 과세가능 정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각각 과세가능 공급이 과세 가능한 정도에 대해 상응하는 설명으로 별표가 붙은 경우를 포함한다면 충족하게 된다.

20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70.

203) GST Ruling GSTR 2013/1.

라. 세금계산서 샘플양식

1) \$1,000 미만의 과세대상 공급의 경우

<b>1</b>	<b>Tax invoice</b>	
<b>2</b>	Windows to Fit Pty Ltd ABN: 32 123 456 789 <b>3</b>	15 Burshag Road Festler NSW 2755
<b>4</b>	<b>Date:</b> 1 August 2018	
	<b>To:</b> Building Company 254 Burshag Road Festler NSW 2755	
	<b>Description of supply</b>	<b>Total</b>
	Window frames <b>5</b>	\$825
	<b>TOTAL PRICE INCLUDING GST</b>	<b>\$825 <b>6</b> + <b>7</b></b>

출처: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Tax invoices(세금계산서), <https://www.ato.gov.au/Business/GST/Tax-invoices/#SalesOf1000OrMore> 에서 이용가능.

- ① 세금계산서
- ② 사업체명
- ③ 사업자번호(ABN)
- ④ 날짜
- ⑤ 제품
- ⑥+⑦ 부가가치세 포함 총가격

2) \$1,000 이상의 과세대상 공급의 경우

**1 Tax invoice**

**2** Windows to Fit Pty Ltd  
 ABN: 32 123 456 789 **3** 15 Burshag Road  
 Festler NSW 2755

**4** Date: 1 August 2013

To: Building Company **8**  
 254 Burshag Road  
 Festler NSW 2755

Qty	Description of supply	Unit price	GST	Total
<b>5</b> 50	Window frames	\$150	\$15	\$8,250
10	Deadlocks	\$40	\$4	\$440
			<b>6</b>	
<b>TOTAL AMOUNT PAYABLE</b>				<b>\$8,690</b>

**7** The total price includes GST

출처: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Tax invoices(세금계산서),  
<https://www.ato.gov.au/Business/GST/Tax-invoices/#SalesOf1000OrMore>에서 이용가능.

- ① 세금계산서
- ② 사업체명
- ③ 사업자번호(ABN)
- ④ 날짜
- ⑤ 제품
- ⑥ 부가가치세
- ⑦ 부가가치세 포함 총가격

3) 혼합공급

<b>1</b> TAX INVOICE			
<b>2</b> Owl Student Resources ABN: 32 123 455 271 <b>3</b>		75A Donne S Milton SA	
<b>4</b> Date:	12 August 2019		
To:	St Brian's Secondary School 116 Larkin Parade Ginsberg SA		
Qty	Description of supply	Unit price	TOTAL
<b>5</b> 30	Tax Studies Primer	\$24.00	\$720
	<b>6</b> GST	\$2.40	\$72
<b>7</b> 75	Bottled water	\$1.00	\$75
<b>TOTAL including GST</b>			<b>8</b> \$867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95-120.

- ① 세금계산서
- ② 사업체명
- ③ 사업자번호(ABN)
- ④ 날짜
- ⑤ 과세되는 공급
- ⑥ 부가가치세
- ⑦ 과세되지 않는 공급(영세율적용)
- ⑧ 부가가치세 포함 총가격

## 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가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처럼 공급자가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recipient created tax invoices: RCTIs)가 발행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sup>204)</sup> 국세청은 일반적인 경우 및 특정한 산업 거래에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용을 승인하였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sup>205)</sup> 국세청은 또한 특정한 산업 상황에서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첫째, 수량과 품질 분석 후에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록 사업자에게 이루어지는 농산품의 공급으로 포도재배(viticulture), 원예(horticulture), 목초(pasturage), 양봉(apiculture), 양계(poultry farming), 낙농(dairy farming) 그리고 재배(cultivation), 농작물 수확(crop gathering) 또는 축산(livestock rearing)과 관련된 사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적용된다.

둘째, 정부 부처(department), 정부 부서(branch) 또는 다른 승인된 단체 같은 사업자등록이 된 정부단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공급에 적용된다.

셋째, 최소 \$20,000,000의 매출액을 거두는 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공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25,000,000의 매출액을 가지는 한 회사가 그 매출액 중 \$10,000,000가 면세가 되는 금융공급이라 하더라도 매출액 요건은 충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된 약정이 있을 것 그리고 양 당사자가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0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29-70(3).

205) GST Ruling GSTR 2000/10.

### 3 신고와 납부

#### 가. 신고(Lodging Returns)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납세자는 각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sup>206)</sup> 사업체가 월별 과세기간 적용을 받는 경우 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말일 다음 달의 21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6월을 위한 신고는 7월 21일이 신고기한이 된다. 분기별 신고하는 납세자는 신고는 4월 28일(3월 분기), 7월 28일(6월 분기), 10월 28일(9월 분기), 2월 28일(12월 분기)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장이 적용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승인된 형식, 즉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로 신고해야 하는데, 제출되는 신고서에 관한 정확한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는 표준방법과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 표준방법은 월별 신고납세자와 분기별 신고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각 과세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인 방법에는 '분기별 송금(quarterly remittance)'방법과 '분할납부(instalments)'방법이 있다. 분기별 송금방법이란 매 분기에는 약식신고서(abbreviated form)를 제출하고, 매년 모든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분할납부방법이란 소규모 납세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는 분기별로는 분할납부하고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분할납부방법은 소규모 사업자 또는 비상업(non-business)적 사업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2,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가 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신고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 다음 2월 28일까지가 기한이다.

20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1-5.

표준방법을 Option 1, 분기별 송금방법을 Option 2, 분할 납부방법을 Option 3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약하면 분기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 VIII-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선택 가능한 방법	내 용
표준방법 (Standard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신고서는 2페이지의 사업활동보고서(BAS)에 포함</li> <li>· 판매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구매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총매출액, 수출판매액, 면세대상, 자본적 구매·비자본적 구매 항목별로 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뒤 온라인으로 납부</li> </ul>
분기별 송금방법 (Quarterly Remittance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분기에는 약식신고서(abbreviated form)를 제출하고, 매년 모든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li> <li>· 판매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구매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총매출액 세 가지를 항목에 맞게 금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li> <li>· 연간 보고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li> </ul>
분할 납부방법 (Instalments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로는 분할납부하고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li> <li>·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 방법 사용 가능</li> <li>① 신고방법을 선택하는 소득연도에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 entity)이거나 연매출 \$2,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가지는 비상업적(non-business) 납세자</li> <li>② 부가가치세 신고를 월별로 할 것을 선택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어야 함</li> <li>③ 현재 과세연도 이전 최소 4개월의 기간에 대해 매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4개월 월별신고서, 2개 분기의 분기별 신고서, 한 달의 신고서와 한 분기 신고서 제출의 경우에 충족)</li> <li>④ 이전에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li> <li>⑤ 이전 연도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지 않은 경우</li> </ul>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918-010~040의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

2017년 7월 1일부터 \$10,000,000 미만의 매출액을 가지는 소기업은 연간 사업활동보고서(BAS)상의 보고요건이 간소화된다. 즉 총매출액, 판매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구매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에 대해서만 기

재하면 되고, 수출판매액, 영세율 판매액, 자본적 구매와 비자본적 구매에 대한 정보는 기재할 의무가 없게 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소규모 사업과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단체는 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sup>207)</sup>

만약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20,000,000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전자적으로 신고<sup>208)</sup>·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사업활동보고서(BAS)에 포함된다.

#### 나. 납세의무 확정(Assessment)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보통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확정통지는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보내져야 하지만, 신고서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확정통지로 간주되므로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에 확정통지가 명목상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납세자의 신고서가 간주확정통지가 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확정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확정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통지를 발행해 줄 것을 국세청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이 30일 이내에 통지를 발행하지 못한다면 납세자는 통상적인 이의절차와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다. 납부(Payment)

통상적으로 납부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순금액이 0보다 많을

20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 151.

208) 전자신고를 위한 사이트는 ATO's Business Portal([www.bp.ato.gov.au](http://www.bp.ato.gov.au))이고, 일주일에 7일,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때 납부의무가 생기게 된다.<sup>209)</sup> 순금액은 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조정이 있다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sup>210)</sup> 또한 와인세(wine tax) 또는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의 액수만큼 증가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 만큼 감소되기도 한다.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정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같으며, 신고기한은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신고가 기한이 지나서 이루어지면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국세청은 특별한 상황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권한이 있다. 단기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로 국세청은 만약 납세자가 호주를 떠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다면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상황에서는 출국금지명령을 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20,000,000 이상이면 전자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납부를 해야 한다.<sup>211)</sup> 다른 경우에는 전자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고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 라. 환급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 순금액(net amount)이 0보다 더 적을 때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을 권리는 국세청이 관련 금액에 대한 확정서를 발행한 때에 생긴다.<sup>212)</sup>

국세청은 14일 이내에 환급금 유보(retention)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납세자는 환급을 유보하겠다는 국세청의 결정에 통상적인 이익 및 불복절차에 따라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뒤이은 확정통지의 발행 또는 수정확정에 의하여 유

20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3-5.

21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7-10.

21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3-10.

21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5-10.

보기간이 만료되면 적용하지 않는다.<sup>213)</sup> 만약 국세청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지 않으면, 이 환급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sup>214)</sup> 국세 환급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납부할 사업활동보고서(BAS)상의 다른 종류의 세금(예를 들어 법인세)과 상계할 수 있다.

#### 4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상 사업자등록번호는 Australian Business Number(ABN)라고 표시된다. Australian Business Number(ABN)는 부가가치세 및 다른 세금 관련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사업자번호이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ABN)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번호(ABN)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자등록번호로 역할을 하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ABN)는 세금계산서에 일반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령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5 사업자등록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단체로 부가가치세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매출액이 일정 한도(75,000달러, 비영리단체의 경우 15,0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와 같이 매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여야 하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

213) Sanctuary Australasia Pty Ltd v FC of T [2013] AATA 371.

214) Taxation(Interest on Overpayments and Early Payments) Act 1983, §§12AA, 12AF.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ABN)가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호주 비거주자가 호주와 사업거래를 하려면 호주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처리를 하면 된다.

## 6 | 확인조사

### 가. 개요

국세청은 광범위한 정보수집권(information-gathering power)과 접근권(access power)이 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① 정보를 제공할 것, 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 앞에 참석하여 증거를 제출할 것, ③ 서류를 작성할 것, ④ 모든 건물, 장부, 서류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의 목적상 다른 서류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의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두 가지 제한은 직업상 특권 원칙(the doctrine of professional privilege)과 공무원 및 다른 자의 기밀정보 보호 원칙이다.

### 나. 정보수집권(Information-gathering power)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사건과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sup>215)</sup>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국세청에 줄 것, 국세청 또는 권한을 받은 공무원에게 출두하여 증거를 제공할 것, 납세자의 점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각 경우 그 권한은 세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215)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353-10.

여기서 세법이란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와인균등세, 고급자동차세 관련 법 등을 포함한다.

정보 수집을 위한 통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다. 첫째, 통지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 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두 또는 문서로 행할 것, 선서와 함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둘째, 회사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것 또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sup>216)</sup>, 출두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나 선서를 하는 것은 개인만 가능하다.<sup>217)</sup> 납세자가 그렇게 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 사건에 비추어 법원은 그러한 명령은 납세자가 순응(compliance)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적시해야 하고, 그러한 시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 국세청은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위한 합리적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그러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의 부서장(Deputy Commissioner)실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 다. 장소, 서류 및 다른 자산에 대한 접근권

정보수집권 외에 국세청은 장소, 서류 및 다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접근권(access powers)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한에 의거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은 간접세법의 목적으로 ① 합리적인 시간에 토지 또는 장소에 들어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고, ② 합리적인 시기에 서류, 재화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으며, ③ 서류를 검사·검토하고 사본을 얻거나, 일부를 발췌할 수 있으며, ④ 재화 또는 다른 재산을 검사·검토하거나, 세거나, 측정하거나, 달아보거나, 테스트해보거나 분석할 수 있고, 그러한 목적으로 샘플을 얻을 수 있다.<sup>218)</sup>

216) Perron Investments Pty Ltd & Ors v DFC of T 89 ATC 5038.

217) Smorgon v FC of T 76 ATC 4364.

218)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353-15.

세무공무원은 장소의 점유자가 서면으로 조사허가(written authority)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후에 그러한 서면 허가를 제시하지 못하면 장소에 들어가거나 남아 있을 수 없다. 이 허가는 검색할 장소 및 검색대상이 되는 서류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sup>219)</sup> 국세청의 접근권은 폭넓게 해석이 되지만, 그러한 권한은 부여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목적은 납세자의 업무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도 포함한다.

## 7 행정상 제재(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등)

### 가. 행정상 제재(Penalties)

호주의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에 의해서 부과되며, 납부세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나 일정한 수의 ‘벌점(penalty units)’으로 표현된다. 2017년 7월 1일 이후에 행해지는 위반에 대해서 벌점(penalty unit) 하나의 가치는 210달러이다. 이전에는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행해진 위반에 대해서는 180달러, 2012년 12월 28일 이후에 행해진 위반에 대해서는 170달러였다.<sup>220)</sup>

정보관련 위반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는 2년간의 구금(two years imprisonment)이다. 개인의 경우 120벌점(penalty units)까지의 벌금이 추가로 또는 대신 부과될 수 있다.<sup>221)</sup> 장부보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20벌점(penalty unit)까지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sup>222)</sup> 다만 적절한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의 표는 「조세행정법」의 주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219) FC of T v Citibank Ltd 89 ATC 4268.

220)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8-000.

221)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8-130.

222)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288-25.

〈표 Ⅷ-3〉 호주의 「조세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의무 위반의 내용	제재
부가가치세 미납부	일반가산금
벌금 미납부	일반가산금
부가가치세 목적 사업자등록 안함	20벌점
사업자등록 취소 안함	20벌점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28일의 기간 동안 1벌점으로 최대 5벌점</li> <li>•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증가됨</li> </ul>
장부 미보유	20벌점
세금계산서 미발급	20벌점
조정기록(adjustment note) 미발행	20벌점
수령인에게 저가의 공급 미통지	20벌점
세금계산서 조정기록 중복 발행	20벌점
관세 문서에 저가(low value) 공급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	20벌점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할 경우	부족액과 상황에 따라 다름
저가(low value) 공급 규칙에 따라 소비자의 지위를 잘못 나타낸 경우	부족액과 상황에 따라 다름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00벌점
납세의무자가 서류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을 할 경우	납부액의 75%
부가가치세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가산세는 회피한 세금의 50%</li> <li>• 조세회피방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주장될 경우 기본 가산세는 25%</li> </ul>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18-300.

2017년 7월 1일부터 중요 국제 사업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제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벌칙은 두 배가 된다.<sup>223)</sup>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조력가에 대

223)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284-90.

해서도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회피나 탈세를 통하여 세금체계를 남용하는 계획을 제공하는 기획자(promoter)가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제재는 개인에게는 5,000벌점, 법인에는 25,000벌점과 사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계획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두 배 중에서 더 큰 것을 벌칙으로 한다.<sup>224)</sup>

납세자가 진술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진술(false or misleading statement)에 대한 제재는 부과되지 않는다.<sup>225)</sup>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 제재(base penalty)는 ‘고의적인 묵살(intentional disregard)’의 경우에는 부족분의 75%, ‘무모함(recklessness)’의 경우에는 50%, ‘부주의함(no reasonable care)’의 경우에는 25%이다. 만약 부족분이 없다면 고의적인 묵살에는 60벌점, 무모함의 경우에는 40벌점, 부주의함의 경우에는 20벌점이 기본 제재이다.<sup>226)</sup> 납세자의 방해(hindrance)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까지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방해가 있었거나,<sup>227)</sup> 납세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고의적인 묵살을 저지른 경우<sup>228)</sup>에 추가적인 벌칙 상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자발적인 공개를 할 경우에는 벌칙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sup>229)</sup> 만약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조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권고하기 전에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감소율은 일반적으로 80%(부족분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00%)이고, 공개는 그 후에 이루어졌으나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게 하였다면 20%의 감소율이 적용된다.<sup>230)</sup> 납세자가 체포된 후, 또는 유죄증거가 이미 밝혀진 후에 실토를 하는 경우, 공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sup>231)</sup>

224)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20-130.

225)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284-75.

226)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284-90.

227) The Taxpayers v FC of T [2011] AATA 33.

228) Sharratt v FC of T [2015] AATA 293.

229)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Sch 1, §284-225.

230)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8-300.

231) Miscellaneous Taxation Ruling MT 2012/3.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25%의 제재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공개가 있으면 20%까지 감소할 수 있는데<sup>232)</sup>, \$50,000의 25% 제재는 자발적인 공개를 근거로 하여 \$10,000까지 감소될 수 있으며, 제재 면제에 대한 일반 재량에 따라 \$2,500까지 추가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sup>233)</sup>

나. 가산세율

일반가산금 요율(General interest charge: GIC)은 분기별로 달라지는데, 최근의 요율은 아래와 같다. 일반가산금은 그것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표 Ⅷ-4〉 일반가산금 요율(General interest charge: GIC)

(단위: %)

연도 및 분기		GIC 연별 이율 (단순 이자)	GIC 일별 이율 (복리)
2015	1월 ~ 3월	9.75	0.02671233
	4월 ~ 6월	9.36	0.02564383
	7월 ~ 9월	9.15	0.02506849
	10월 ~ 12월	9.14	0.02504109
2016	1월 ~ 3월	9.22	0.02519126
	4월 ~ 6월	9.28	0.02535519
	7월 ~ 9월	9.01	0.02461749
	10월 ~ 12월	8.76	0.02393443
2017	1월 ~ 3월	8.76	0.024
	4월 ~ 6월	8.78	0.02405479
	7월 ~ 9월	8.73	0.02391781
	10월 ~ 12월	8.70	0.02383562
2018	1월 ~ 3월	8.72	0.02389041
	4월 ~ 6월	8.77	0.02402740
	7월 ~ 9월	8.96	0.02454794
	10월 ~ 12월	8.96	0.2454794
2019	1월 ~ 3월	8.94	0.02449315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8-300.

232) JG and JA Williamson Holdings Pty Ltd v FC of T 2007 ATC 2206; [2007] AATA 1344.

233) Loren (as trustee for the Loren Family Discretionary Trust) v FC of T [2008] AATA 631.

## 8 | 행정형벌(벌금, 징역)

행정형벌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죄와 관련되는 광범위한 규정들이 있고,<sup>234)</sup> 조세포탈(tax fraud)과 같은 다양한 일반 형사상 범죄를 규정한 조항들이 있다.<sup>235)</sup>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 중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이 부과되기도 한다. 사업자 신원 인수(identity takeover)와 위장사업자(false identity creation)가 이 영역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어 관심사가 되고 있다.<sup>236)</sup> 사업자등록번호(ABN)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벌칙이 적용된다.<sup>237)</sup>

국세청에 정보 또는 서류 제출, 불참석하라는 명령을 납세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sup>238)</sup> 출두 시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sup>239)</sup> 또한 법원은 위반행위자에게 그 명령을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sup>240)</sup>

국세청의 명령에 대하여 거짓이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 및 범죄가 될 수 있는데,<sup>241)</sup> 이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행해진 설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242)</sup>

234)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Pt III.

235) Criminal Code §134.2, §135.2; DPP v Rowson [2007] VSCA 176 참조. ATO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raudulently prepared activity statements, see Practice Statement PS LA 2008/11.

236)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8-300.

237) A New Tax System (Australian Business Number) Act 1999, §23.

238)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8C.

239)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8D.

240)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8G.

241)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8K, 8N.

242) 호주 조세행정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8J.

## 예시

- ① 두 명의 사업자 신원을 훔쳐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사용한 자가 있다. 그 후 그 자는 회사에 대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허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그 자는 사기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00,000 이상의 배상명령을 받았다.<sup>243)</sup>
- ② 수년간 총 \$19,000,000 이상의 허위 부가가치세 환급요청을 한 사업자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sup>244)</sup>
- ③ 허위의 비용공제를 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한 사업의 대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sup>245)</sup>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8-300.

243) ATO Media Release Nat 2006/36.

244) R v Bromley [2010] VSC 345.

245) ATO Media Release 3 October 2018.



## IX.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1.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 기본구조
2. 소규모 사업자 요건
3. 총매출액(Aggregated turnover) 계산





## IX.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 1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 기본구조

호주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비견할 만한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small business entities)이다.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 entity)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① 현금주의 회계(cash accounting) 채택, ② 매입세액 공제의 연간배분(annual apportionment), ③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라는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sup>246)</sup>

소규모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총매출액 테스트에서 해당 사업체 및 특수 관계 사업체(associated entities)의 수입이 \$10,000,000 이하여야 한다.<sup>247)</sup>

2007년 7월 1일 전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는 이러한 혜택은 연간 매출액에 따른 다양한 테스트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 이후의 과세기간에는 이 테스트는 여전히 사업(business)을 구성하지 않는 기업 활동을 행하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체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즉 일부 자선단체, 연금기금 수탁자와 정부기관을 말한다.<sup>248)</sup>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액' 테스트라고 다시 이름이 붙여진 이 심사기준은 일정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데도 여전히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의무적 사업자등록, 의무적 월별 과세기간, 전자신고(electronic lodgment)와 같은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연간 납부의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소규모 사업체 테스트에 사용되는 총매출액 사이에는

246)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50.

247) 2016/2017년 소득연도 동안 소규모 사업체로 인정되는 사업체에는 총매출액 기준은 \$10,000,000이 아니라 \$2,000,000 미만으로 규정되었다.

248)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50.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총매출액 테스트는 전체 경상 소득에만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면세와 일부 다른 공급 가격을 제외한다. 둘째, 총매출액 테스트는 사업체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계열업체와 연관업체의 매출액을 고려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매월 말에 결정이 되지만 소규모 사업체로서의 사업체의 지위는 각 소득연도 동안 결정된다.<sup>249)</sup>

## 2 | 소규모 사업자 요건

### 가. 수업 수행 요건

소규모 사업자의 첫 번째 요건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50)</sup> 사업은 거래와 직업을 포함하지만 피고용인으로서의 직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체는 그 사업체가 이전에 수행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그 사업의 수행을 중지한 소득연도에 소규모 사업체였다면 소득연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약 이 사업체가 그 해 전부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가 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sup>251)</sup>

### 나. 총매출액 요건

소규모 사업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총매출액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매출액이 결정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세 가지 대체적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총매출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매출액 테스트를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sup>252)</sup>

249) *Id.*

250) 1997년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328-110.

251)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50.

252) *Id.*

## 1)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현재 연도의 추정 총매출 또는 실제 총매출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만약 사업체의 이전 연도의 총매출액이 \$10,000,000 이하이면 그 사업체는 첫 번째 테스트를 충족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연도의 유사 또는 실제 총매출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테스트가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18/2019년도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가 2017/2018년도 동안 \$9,900,000의 총매출을 거두었다면 그 회사는 2018/2019년도 동안 총매출액 \$10,500,0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고 해도, 2018/2019년에 소규모 사업체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두 번째로는, 만약 현재 연도의 총매출액이 연도의 첫날에 \$10,000,000 이하가 될 것 같다고 계산이 되면 그 사업체는 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체는 만약 이전 두 개 연도 각각의 총매출액이 \$10,000,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남용방지 조항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도 고안되었다. 현재 연도의 총매출이 \$10,000,000 이하일 것인지는 객관적 판단의 문제로 이것은 올해 연도 시작 시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관련되는 요소들로는 ① 전년도의 총매출액, ② 판매 패턴의 변화의 전망, 직원 수 또는 운영시간의 감소, ③ 그 사업을 그만둘 계획, ④ 가뭄, 제조 가격하락, 경쟁의 강화와 같은 다른 요소의 전망 등을 포함한다.

 예시

한 회사의 2017/2018년도의 총매출은 \$9.5m이고 2018/2019년도의 총매출은 \$10.1m이다. 심각한 산업 경기침체가 2019년 6월에 시작되었고, 이 회사는 곧 그 직원의 절반을 줄일 예정이다. 비록 이 회사는 2019/2020년도에는 이전 연도 총매출이 \$10.1m이므로

첫 번째 테스트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2019년 7월 1일 기준 2019/2020년도의 총매출이 \$10m 이하로 될 것 같고, 두 개의 이전 연도의 총매출액 중 적어도 하나가 \$10m 이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테스트를 충족할 수 있다.

만약 2017/2018년도의 총매출이 \$10.5m였다면 2019/2020년도에 두 번째 테스트를 충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각각의 두 개 연도 모두가 \$10m를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실제 2019/2020년도의 총매출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세 번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65.

과세연도 도중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체는 이전 연도의 총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테스트 또는 세 번째 테스트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번째 테스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에 상황에 근거하여 전체 연도의 예상 총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체적 방법은, 만약 현 연도의 총매출액이 그 해 말에 계산했을 때 실제로 \$10,000,000 이하라면 세 번째 테스트를 충족하게 된다. 이 방법 또한 이전 연도의 총매출액과는 무관하다. 이 방법은 소규모 사업자의 적격성을 그 해 연도 말에 계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이 테스트를 충족하는 사업체는 그 해 동안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혜택, 즉 현금주의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회계, 매입세액 공제의 연간 배분 또는 부가가치세의 분기별 분할 납부와 같은 부가가치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시

2018/2019년도의 회사의 총매출은 \$10.5m이고,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2019/20 총매출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8월 심각한 화재로 인하여 사업장소가 파괴되어,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2019/2020년의 실제 총매출은 \$9.3m이 되었다. 이 경우 회사는 2019/2020년에 세 번째 테스트를 충족하게 된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65.

### 3 총매출액(Aggregated turnover) 계산

#### 가. 연간 총매출(Annual turnover)의 계산

어떤 사업자의 소득연도 동안 총매출액은 사업체 자신의 연간 매출액과 다른 관계 사업체<sup>253)</sup>의 연간 매출액의 합이다. 그러나 총매출액은 관련 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사업체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또 다른 관련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하여 관련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련 사업체는 복수의 사업체라기보다는 단일한 사업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sup>254)</sup>

#### 예시

S는 I의 계열사업체이므로 관련 사업체가 된다. S와 I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소득은 S의 총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S가 또 다른 X회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또한 관련 사업체가 된다. S와 I와의 거래 또는 S와 X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소득은 S의 총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I와 X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통상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65.

한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소득연도 동안 어느 때든 관련 사업체인 사업체의 연간 총매출을 포함한다. 그러나 총매출액은 관련 사업체가 아닌 기간 동안 그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통상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sup>255)</sup>

253) 계열사업체(affiliated entities)와 연결사업체(connected entities)를 말한다.

254)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65.

255) *Id.*

 예 시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어떤 회사의 B의 지배적인 주식보유는 그 회사가 관련 사업체라는 것을 나타낸다. 2019년 1월 1일 B는 주식을 처분하여, B와 그 회사는 더 이상 관련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통상소득은 2018/2019년도의 B의 총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65.

## 나. 연간 매출 계산

한 과세연도의 사업체의 연간 매출은 그 사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상소득이다.<sup>256)</sup>

<sup>256)</sup>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265.

## X. 기타

### - 호주 소비세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

1. 외화환산
2. 수입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별규정
3. 여행 및 여행주선에 대한 과세
4. 투자용 금 판매에 관한 과세
5. 중고품 거래 과세
6. 제1차 생산자(Primary producers)
  - 농업·임업사업자의 경우





## X. 기타 - 호주 소비세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

### 1 | 외화환산

만약 가격이 외화로 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국세청이 정한 방법으로 호주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sup>257)</sup>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환산비율은 호주연방 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상업은행 또는 다른 환전 기관,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일단 환율이 정해지면, 그 환율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전한 상업적 이유가 있다면 환율이 변동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율을 바꾸어가면서 사용한다면,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저가 수입(low-value imports)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적용되는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 환산규정은 부가가치세 법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sup>258)</sup>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에 표시된 가치는 반드시 호주 화폐로 환산되어야 한다.<sup>259)</sup>

---

257)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85. 외화환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GST Ruling GSTR 2001/2; Goods and Services Tax: Foreign Currency Conversion Determination 2018이다.

258) Taxation Determination TD 2006/5.

259) 임시 가이드라인은 Draft GST Digital Currency Conversion Determination 2018 (DCC 2018/D1)에 규정되어 있다.

## 2 수입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별규정

### 가. 보수(Repair)를 위하여 수출되었던 재화의 수입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수출되었던 재화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었을 것인데, 이들 재화가 나중에 다시 호주로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리(repair) 또는 개조(renovation)로 인하여 증가된 가치에 제한된다.<sup>260)</sup>

즉 이 경우의 과세가격은 ① 수리나 개조 비용(재료, 노동의 대가 및 다른 비용), ②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드는 운임 및 보험료, ③ 적재·처리·증진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예정인 금액, ④ 관세를 합한 금액이 된다.

### 나.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통상의 규칙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의한 공급은 그 공급이 호주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비거주자가 호주 관련 공급 매출액이 \$75,000 이상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만 과세대상 공급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비거주자는 호주 내에 실재(presence)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비거주자와 호주의 매입자는 ① 공급이 호주에서 비거주자 공급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업(예를 들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② 매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sup>261)</sup>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비거주자인 공급자가 아니라 호주의 매입자가 지불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라고 한다.<sup>262)</sup>

매입자 납부제도는 첫째, 공급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대리인

26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 117.

26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83-5.

262)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9-095.

(agent)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둘째, 공급이 용역과 권리의 사업상 공급 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비자에 대한 낮은 가치의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역외공급, 셋째,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취급되지 않는 권리 또는 옵션의 역외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자 납부에 대한 합의는 이전의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과세 공급에는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sup>263)</sup>

#### 다. 소비자에 대한 저가(low-value) 재화의 역외 공급

2018년 7월 1일까지 \$1,000 이내의 가격의 관세로 배송지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되었다. 이 면제를 ‘저가 기준(low value threshold: LVT)’이라고 하는데, 이는 알코올음료와 담배와 같은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에는 이러한 \$1,000 면제가 폐지되고, 판매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계로 대체되었다.<sup>264)</sup>

이러한 새 규정은 호주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재화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왔던 외국의 소매업자에 비하여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동종 재화를 판매하는 호주 국내의 소매업자에 대한 경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규칙으로 인하여 역외공급자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송금을 해야 한다.<sup>265)</sup>

첫째, 재화의 역외공급(offshore supply)이 있을 것, 둘째, 그 재화의 가격이 저가일 것(\$1,000 이하), 셋째, 공급자가 관련되는 공급에서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호주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액 \$75,000(비영리단체는 \$150,000)이상일 것, 마지막으로 공급이 호주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공급자는 온라인구입, 전화 구입 등 소비자가 구입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263) Interpretative Decision ID 2004/117.

26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ubdiv 84-C.

265)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9-130.

### 3 | 여행 및 여행주선에 대한 과세

#### 가. 여행관련 운송에 대한 과세

호주 내에서 호주 밖의 목적지로 승객을 운송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며,<sup>266)</sup> 호주 밖에서의 이동 또는 호주 밖에서 호주 내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항공운송이든, 선박운송이든 마찬가지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운송이나 여행 주선은 그 자체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호주 밖에서 사용되거나 활용되는 다른 공급<sup>267)</sup>의 주선에 대한 여행사의 수수료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주 국내 여행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여행 주선자가 해외 항공운행요금을 주선하는 것은 과세에서 제외가 되지만, 국내에서 여행을 주선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여행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승객이 비거주자일 경우 그 항공권을 그 승객이 호주 밖에 있을 때 구매하였다면 호주 내의 항공여행도 영세율이 적용된다.<sup>268)</sup> 둘째, 승객의 국제 항공 운항의 호주 부분은 그것이 국제 항공권의 일부를 이루거나 그러한 항공권의 상호참조였다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sup>269)</sup> 이는 국제 부분과 국내 부분 간에 경유지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셋째, 승객의 바다여행의 국내 부분은 그것이 같은 운송공급자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sup>270)</sup>

호주내의 철도, 버스, 자동차운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여행자가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여행이 호주 밖에서 구매가 되었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26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355.

267) 예를 들어 해외 숙박, 비자 신청, 철도교통, 렌트카, 음식, 오락, 관광 등.

26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355, item3.

269)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355, item2.

270)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355, item4.

## 나. 여행주선을 하는 여행사(travel agent)에 대한 과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운송 및 여행을 주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up>271)</sup> 예를 들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의 항공권 예약 대행에 대한 여행사의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호주 국내의 휴가여행을 주선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호주 밖에서 사용되거나 향유될 다른 공급, 예를 들어 해외 숙박, 비자신청, 철도운송, 렌트카, 식사, 오락, 관광 등을 주선하는 여행사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 결정에도 적용된다.<sup>272)</sup>

영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에 대한 보험을 들거나 보험을 주선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sup>273)</sup> 예를 들어, 수하물·취소·긴급구호(emergency assistance)를 포함한 해외여행에 대한 보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그러한 보험 주선에 대한 여행사의 수수료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여행이 국내여행이라면, 그 여행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므로 보험과 그에 대한 수수료 또한 과세대상이 된다.

### 예시

- ① 여행사 R은 ① 시드니(Sydney)에서 퍼스(Perth)까지 왕복 항공권, ② 퍼스(Perth)에서 3박 숙박, ③ 시드니(Sydney)에서 뉴욕(New York)까지의 항공편, 렌트카, 극장표, 그리고 ④ 해외여행에 대한 여행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행 패키지를 판매하였다. 여기에서 시드니(Sydney)/퍼스(Perth) 여행과 퍼스(Perth) 숙박에 대한 여행사 R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 시드니(Sydney)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M은 고객 S의 여행을 주선하고자 한다. S는 런던에서 회의(convention)에 참석하고, 이와 연결하여 프랑스에서 짧은 여행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외여행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골드코스트(Gold Coast) 쿨랑가타로

27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355, item7.

27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360.

27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38-355, item6,7.

여행을 하고자 하며, 해외여행 출발 직전에는 발표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드니에서 이틀간 호텔에 투숙하고자 한다. M은 이러한 여행에 대한 패키지 및 적합한 보험까지 S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행 구성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서는 구성요소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행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과세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항목	여행 구성	여행 내용	과세여부
1	국내 항공	시드니-쿨랑가타-시드니	과세대상 공급
2	숙박	쿨랑가타	과세대상 공급
3	렌트카	쿨랑가타	과세대상 공급
4	호텔 숙박	시드니에서 2박	과세대상 공급
5	국내 항공	시드니-멜버른-시드니 (멜버른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국제 항공권)	영세율 적용
6	국제항공	멜버른-영국-멜버른	영세율 적용
7	극장 티켓	런던	과세대상이 아님
8	유럽 항공	런던-파리-런던	영세율 적용
9	숙박	파리	과세대상이 아님
10	렌트카	파리	과세대상이 아님
11	국제항공과 연결편에 대한 여행 보험		영세율 적용
12	다른 여행에 대한 여행 보험		과세대상 공급

그러므로 M은 1번에서 4번까지의 항목과 12번째 항목에 대하여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ATO Fact Sheet NAT 4518 GST — Travel Agents and Commission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travel-and-tourism/gst-and-international-travel/?anchor=Commissions#Commissions>에서 이용 가능.

#### 4 투자용 금 판매에 관한 과세

귀금속<sup>274)</sup>의 공급은 제련 후 딜러에게 첫 번째로 공급되는 것(영세율 적용)을 제외하고는 면세이다. 2017년 4월 1일부터, 귀금속류를 구성하는 재화의 과세 가능공급은 만약 수령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공급 당시 그 재화의 시장가격이 귀금속류 기준<sup>275)</sup>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무적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의 적용을 받는다. 재화가 귀금속을 구성하는 한 그 재화는 중고품에 적용되는 Div. 66의 특별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276)</sup>

#### 5 중고품 거래 과세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중고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중고품 판매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즉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에 만약 사업목적으로 그 재품을 구입하였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고품의 정의에 있어서 우선 '물품(goods)'은 어떤 형태의 유형 개인자산을 의미한다. '중고(second-hand)'라는 용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중고란 '이전에 사용'되거나 '새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물품은 이전에 소유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중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전에 소유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중고가 아닐 수도 있다.<sup>277)</sup> 호주 국세청은 물품이 '고유한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중고라고 정의한다. 다른

274) 금, 은, 백금 또는 귀금속 정의의 목적상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27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 86.

276)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6-210.

277) GST Ruling GSTR 2000/8; *LR McLean and Company Limited & Ors v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1994] 3 NZLR 33.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 또한 중고가 될 수 있지만, 물품이 소매가 되기 전에 이전의 소매제조자 또는 배급자에 의해 팔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sup>278)</sup> 전시물품으로 사용된 물품은 고유목적으로의 그 사용이 미미하고, 그 물품이 전면적인 품질보증과 함께 새 물품처럼 팔리지 않는다면 중고물품으로 취급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공급이 아닌 중고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이 된다.

첫째, 사업자등록이 된 판매자로부터 구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딜러가 부가가치세 목적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그 물품을 사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취득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의 이론적 근거는 공급자는 물품을 살 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데 있다. 즉 중고품을 살 때에 가격은 매입세액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재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제액수는 중고품의 가격의 1/11이다. 그러나 중고품의 가격이 300달러를 초과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나중 재판매 시의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을 수 없다.<sup>279)</sup>

둘째, 부가가치세에 대한 글로벌(Global) 회계방식과 매입세액 공제는 일정한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sup>280)</sup> 글로벌(Global) 회계방식은 ① 중고품이 사업자등록이 안된 공급자로부터 취득되었고, 고객에게로 재공급을 위하여 나누어졌을 경우 또는 ② 특정 유형의 중고품이 사업자등록이 된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취득되었고, 딜러가 글로벌(Global) 방식을 적용할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글로벌(Global) 회계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중고품에 대한 설명(수량 포함), 날짜 및 가격을 적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sup>281)</sup>

278)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6-100.

279)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6-110.

280)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16-120.

28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66-55.

## 6 제1차 생산자(Primary producers) - 농업·임업사업자의 경우

호주에서는 세법에서 농업(farming) 등 기초 산업에 대한 정의를 일일이 두지 않고, 그 정의를 '제1차 생산자(primary producers)'라는 광범위한 분류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1차 생산자란 식물경작·가축사육·어업활동·진주 채취업·묘목 육성 및 벌목을 하는 개인, 파트너십, 회사를 의미한다.<sup>282)</sup> 제1차 생산자는 일 년에 두 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를 분할납부(instalments)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1차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식품을 판매할 경우를 들 수 있다. 식품(food)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에는 살아있는 가축(live animals)은 포함하지 않고<sup>283)</sup> 있다. 고기는 인간의 소비를 위하여 식품이 되었을 때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의 결정은 권한 있는 자가 그러한 것들을 연방법, 주법, 지방법에 따라 검역을 하고 인간의 소비를 위한 것으로 표시를 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는 거래가 발생할 때 결정이 되므로 만약 생산자가 날고기(car cass)를 인간의 소비를 위한 것으로 검인받기 전에 판매한다면, 그러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sup>284)</sup>

제1차 생산자가 농지(farmland)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매 바로 직전 최소 5년 동안 농업에 사용되어 왔고, 구매자가 그 토지를 농업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호주 정부기관(agency)에 의한 임대 또는 농지의 장기 임대 또한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sup>285)</sup>

282)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Primary production activities, <https://www.ato.gov.au/business/primary-producers/primary-production-activities/> 참조.

283) 갑각류(crustaceans)와 연체동물(molluscs) 제외.

284)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Primary production activities, <https://www.ato.gov.au/business/primary-producers/primary-production-activities/> 참조.

285) *Id.*

농업이 최소 5년 이상 행해지던 분할 토지(sub-divided land)의 매매는 그 토지가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매매가 시장가격보다 싸게 공급자의 특수 관계자에게 이루어진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농지의 매매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매매는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자는 그 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참고문헌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Alan Schenk & Oliver Oldman, *Value Added Tax-A Comparative Approach*, 1st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ATO Fact Sheet NAT 4518 GST — Travel Agents and Commissions.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your-industry/travel-and-tourism/gst-and-international-travel/?anchor=Commissions#Commissions>에서 이용 가능.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Goods and Services Tax Industry Issues: Detailed Food List(부가가치세 산업관련 자료: 상세 식품 목록),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GII/GSTIIFL1/NAT/ATO/00001>에서 이용 가능.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Primary production activities, <https://www.ato.gov.au/business/primary-producers/primary-production-activities/> 참조.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호주 국세청), Tax invoices(세금계산서), <https://www.ato.gov.au/Business/GST/Tax-invoices/#SalesOf10000rMore>에서 이용 가능.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20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Wolters Kluwer, *Australian GST Legislation with Overview* 2019, 22nd Edition, Wolters Kluwer, 2019.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6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McCarthy, Australia's GST design, digitisation and disruption, "20th Anniversary of the GST in Australia: Where policy meets reality" conference 발표자료, UNSW Business School, p. 16, 2019, [https://www.business.unsw.edu.au/News-Events-Site/Events-Site/Documents/Denis-McCarthy\\_%20GST-design-digitisation-and-disruption\\_paper.pdf](https://www.business.unsw.edu.au/News-Events-Site/Events-Site/Documents/Denis-McCarthy_%20GST-design-digitisation-and-disruption_paper.pdf)에서 이용 가능.

Sam Reinhardt & Lee Steel, *A brief history of Australia's tax system*, 2006, [https://www.taxsuperandyou.gov.au/sites/default/files/01\\_Brief\\_History.pdf](https://www.taxsuperandyou.gov.au/sites/default/files/01_Brief_History.pdf)에서 이용 가능.

## 부 록

## 호주 부가가치세법(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목차

\* 저자 주: 호주 부가가치세법 조문편제는 「장(Chapter)-편(Part)-부(Division)-과(Subdivision)-조(Section)」로 구성되며, 그 양은 매우 방대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부(Division)까지의 조문 목차만을 표시한다.

### 제1장 개관

#### 제1-1 편 (서두)

#### 제1부 (서두)

#### 제1-2편 (이 법의 사용)

#### 제2부 (부가가치세 입법 개관)

#### 제3부 (용어 정의)

#### 제4부 (법령상 안내부분(Guide)과 다른 비집행적(non-operative) 내용의 지위\*)

\* 저자 주: 호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률문구뿐만 아니라 그 문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또는 예시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제2장 기본 규칙

#### 제5부 (개관)

#### 제2-1편 (중심 규정)

#### 제7부 (중심 규정)

#### 제2-2편 (공급과 취득)

#### 제9부 (과세대상 공급)

#### 제11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취득)

#### 제2-3편 (수입)

#### 제13부 (과세대상 수입)

#### 제15부 (매입세액 공제되는 수입)

#### 제2-4편 (납부세액계산과 조정)

- 제17부 (납부세액계산과 조정)
- 제19부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 제21부 (대손)
- 제2-5편 (사업자등록)
- 제23부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자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
- 제25부 (사업자등록 방법과 사업자등록 취소)
- 제2-6편 (과세기간)
- 제27부 (과세기간 계산)
- 제29부 (과세기간의 귀속)
- 제2-7편 (신고, 납부, 환급)
- 제31부 (부가가치세 신고)
- 제33부 (부가가치세 납부)
- 제35부 (환급)
- 제2-8편 (특별규칙 체크리스트)
  
- 제3장 부가가치세 면제
  
- 제3-1편 (과세대상이 아닌 공급)
- 제38부 (영세율 적용 공급)
- 제40부 (면세 적용 공급)
- 제3-2편 (과세되지 않는 수입)
  
- 제4장 특별규칙
  
- 제45부 (개관)
- 제4-1편 (사업체가 설립되는 특정한 방식에 관한 특별규칙)
- 제48부 (부가가치세 그룹)
- 제49부 (부가가치세 종교 그룹)
- 제50부 (종교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 제51부 (부가가치세 조인트벤처(joint ventures))

- 제54부 (부가가치세 지점(branches))
- 제57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 제58부 (자격이 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자)
- 제60부 (사업자등록 전 비용)
- 제61부 (비영리 하부 단체)
- 제4-2편 (공급과 취득에 대한 특별규칙)
- 제66부 (중고품)
- 제69부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제70부 (금융공급)
- 제71부 (면세공급자가 제공하는 부가혜택(fringe benefits))
- 제72부 (특수관계자 거래)
- 제75부 (완전한 소유권(freehold interests) 등의 판매)
- 제78부 (보험)
- 제79부 (강제 책임 보험)
- 제80부 (결산 분담 약정)
- 제81부 (세금, 수수료, 요금의 납부)
- 제82부 (땅을 개발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의 공급)
- 제83부 (간접세 지역과 연관이 있는 공급을 하는 비거주자)
- 제84부 (역외 공급)
- 제85부 (전자적 공급)
- 제86부 (귀금속)
- 제87부 (상업 거주지역에서의 장기 숙박)
- 제90부 (회사 합병)
- 제93부 (매입세액 공제 시한)
- 제96부 (간접세지역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공급)
- 제99부 (보증금)
- 제100부 (바우처)
- 제102부 (할부판매 취소)
- 제105부 (채무의 변제로서의 공급)
- 제108부 (보세물품의 과세공급 평가)

- 제110부 (다른 세목과 관계되는 거래)
- 제111부 (고용인에 대한 지급)
- 제113부 (PAYG 자발적 합의)
- 제4-3편 (수입에 관한 특별규칙)
- 제114부 (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관 없는 수입)
- 제117부 (재수입된 재화의 평가)
- 제4-4편 부가가치세 계산과 조정에 관한 특별규칙
- 제123부 (소매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이계산방식)
- 제126부 (사행성 행위)
- 제129부 (공제목적 범위의 변경)
- 제130부 (사적·가사용으로 제공되는 재화)
- 제131부 (공제목적의 연간 배분)
- 제132부 (매입세액 공제 없이 취득한 것의 공급)
- 제133부 (그로스 업 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
- 제134부 (제3자 대가지불)
- 제135부 (영업권의 공급)
- 제136부 (완전히 과세되지 않거나 공제되지 않은 거래와 관련된 대손)
- 제137부 (사업자등록 시 재고품)
- 제138부 (사업자등록 취소·중단)
- 제139부 (유산 분배)
- 제141부 (트레덱스 스킴(Tradex Scheme) 재화)
- 제142부 (초과 부가가치세)
- 제4-5편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별규칙)
- 제144부 (택시 운전자)
- 제146부 (제한적 사업자등록)
- 제149부 (정부기관)
- 제4-6편 (과세기간에 대한 특별규칙)
- 제151부 (연별 과세기간)
- 제153부 (대리인 등 그리고 보험중개인)
- 제156부 (진행률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과 취득)

제157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방식)  
 제158부 (할부구매약정)  
 제159부 (회계처리방식의 변경)  
 제4-7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에 관한 특별규칙)  
 제162부 (부가가치세 분할 납부)  
 제165부 (조세회피방지)  
 제168부 (여행자 환급제도)  
 제171부 (과세대상 수입에서의 관세보증금)

#### 제5장 잡칙

제5-1편 (잡칙)  
 제176부 (자선단체 인증)  
 제177부 (잡칙)

#### 제6장 이 법의 해석

제6-1편 (이 법의 해석 규칙)  
 제182부 (이 법의 해석 규칙)  
 제6-2편 (일부 중요한 개념의 의미)  
 제184부 (사업체의 의미)  
 제188부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의미)  
 제189부 (금융 취득 기준 초과)  
 제190부 (90% 소유 회사 그룹)  
 제6-3편 (용어 사전)  
 제195부 (용어 사전)

별지(Schedule) 1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식품)  
 별지(Schedule) 2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음료)  
 별지(Schedule) 3 (의료보조기구와 의료기구)



## | 저자 약력 |

### 최 정 희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법학 박사(SJD in Taxation)
- 현,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

- 부가가치세 -

호주 편

---

발행	행	2019년 12월 27일
발행인	인	김유찬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TEL: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ipf.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쇄	디자인 범신
ISBN	N	978-89-8191-989-4 94320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